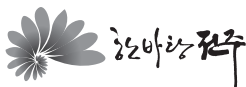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조경단, 조경묘 학술대회

조경단·조경묘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존방안

2020. 10. 30(수) 13:30

전주역사박물관

주최



주관

전북사학회
JEONBUK HISTORICAL ASSOCIATION

◇ 목 차 ◇

• 발표문

- | | | |
|-----|---|-----|
| 1주제 | 조경묘 창건과 역사적 의미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 | 009 |
| 2주제 | 조경묘 건축과 문화유산적 가치
안선호 / 원광대학교 | 023 |
| 3주제 | 조경단 조성과 그 역사성
이 욱 / 한국학중앙연구원 | 039 |
| 4주제 | 조경단 건축과 문화재구역 설정
홍승재 / 원광대학교 | 053 |
| 5주제 | 조경묘, 조경단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홍성덕 / 전주대학교 | 067 |

• 토론문

- | | | |
|-----|----------------------------|-----|
| 1주제 | 한 문 종 / 전북대학교 | 085 |
| 2주제 | 신 응 주 / 조선대학교 | 087 |
| 3주제 | 하 태 규 / 전북대학교 | 089 |
| 4주제 | 이 상 훈 / 전북도청 前학예연구관 | 091 |
| 5주제 | 이 경 찬 / 원광대학교 | 093 |

❖ 학술대회 일정

일 시	발표내용	발표자
13:00~13:30	학술대회 등록	1부 사회 : 조법종 / 우석대학교
13:30~13:50	개 회 사 전북사학회장	이동희
	환 영 사 전주시장	김승수
	축 사 전주시의회의장 전주이씨대동종약원전라북도지원장	강동화 이준기
13:50~14:10	1주제 조경묘 창건과 역사적 의미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
14:10~14:30	2주제 조경묘 건축과 문화유산적 가치	안선호 / 원광대학교
14:50~15:05	휴 식	2부 사회 : 박정민 / 전북연구원
15:05~15:25	3주제 조경단 조성과 그 역사성	이 욱 / 한국학중앙연구원
15:25~15:45	4주제 조경단 건축과 문화재구역 설정	홍승재 / 원광대학교
15:45~16:05	5주제 조경묘, 조경단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홍성덕 / 전주대학교
16:25~16:40	휴 식	
16:40~18:00	종합토론 - 좌장: 이재운 / 전주대학교 - 토론: 한문종 / 전북대학교 신웅주 / 조선대학교 하태규 / 전북대학교 이상훈 / 전북도청 前학예연구관 이경찬 / 원광대학교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조경단, 조경묘 학술대회

조경단·조경묘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존방안

발표문

1	조경묘 창건과 역사적 의미	009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	
2	조경묘 건축과 문화유산적 가치	023
	안선호 / 원광대학교	
3	조경단 조성과 그 역사성	039
	이 욱 / 한국학중앙연구원	
4	조경단 건축과 문화재구역 설정	053
	홍승재 / 원광대학교	
5	조경묘, 조경단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067
	홍성덕 / 전주대학교	

조선왕실의 시조사당 조경묘 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이동희*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전주에 대한 풍패 인식
- III. 조경묘 창건 논의와 건립
- IV. 조경묘 창건의 역사적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조경묘는 조선왕실 최초의 시조 사당으로 영조 47년(1771)에 전주 경기전 북편에 창건되었다. 본래에 건지산에 시조의 묘역조성도 거론되었으나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하여 시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는 사당이 창건되었다. 시조 이한의 묘역은 조선말 1899년 고종대에 가서야 건지산에 조경단으로 조성되었다.

전주는 조선왕조가 일어난 풍패지향으로서 조선건국후 태종대에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 경기전을 창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영조대에 왕실의 시조 사당 조경묘를 창건하고, 조선말 고종대 대한제국 선포후 시조묘역 조경단을 조성하였으며 태조의 주필지 오목대와 목조이안사의 구거지 이목대에 이를 기념하는 비를 세웠다. 조선왕조는 조선건국후부터 멸망시까지 5백년간에 걸쳐 조선왕실의 뿌리로서 전주의 위상을 공고히 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추이를 보면 조선후기로 가면서 전주에 대한 풍패 인식은 더 강화되어 갔다.

조경묘 건립에 대해 이옥은 조선후기 가문중시 풍조를 토대로 조선왕실 최초의 시조사당 조경묘를 창건해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강화하였으며, 조선건국을 수덕의 역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전주는 관념적인 풍패가 아니라 실제적인 풍패가 되었다고 하였다.¹⁾ 조경묘 창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주역사박물관에

*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1) 이옥, 「조선시대 왕실의 시조묘와 조경묘 건립」(『조선시대사학보』38, 2006) ; 이옥, 『조선왕실의 제향공간』(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서는 조경묘 건축과 운영 전반을 담고 있는 『조경묘의』를 국역하였으며, 이동희는 『조경묘의』를 토대로 조경묘의 제반사항을 살폈다.²⁾

이글에서는 이욱이 내린 결론에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 이욱이 의례적 접근에 무게를 실은 감이 있다면 역사적 접근에 보다 무게를 실어보려고 한다. 왜 영조 47년에 이르러 시조묘가 창건되게 되었는지, 시조묘 창건이 영조대 정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주목해 보고, 조경묘 창건을 영조대 전체 국정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래서 조경묘 창건의 국가사적, 지역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한다.

II. 전주에 대한 풍패 인식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그 선조들이 살았던 풍패지향(豐沛之鄉)이다. 풍패란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이 풍패인데서³⁾ 비롯되어 건국자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전주는 조선건국과 함께 풍패지향이 되어 새왕조의 발상지로서 읍격이 승격되는 등 위상이 격상되었다.

조선은 건국후 고구려의 수도 평양, 신라의 왕도 경주, 고려의 왕도 개경과 함께 태조가 태어난 영흥과 그 선조들이 살았던 전주에 봉안하여 이 땅이 새왕조 조선의 땅임을 표방하고 신민들의 충성과 결집을 도모하였다. 태조어진의 전주봉안은 곧 이곳이 조선왕조의 풍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건국후 풍패로서의 전주에 대한 새왕조의 인식은 함경도 영흥·함흥 일원에 비해 강하지 않았다. 전주는 태조가 태어나거나 거주한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으므로 그가 태어나고 살았던 영흥·함흥일원에 비해 풍패로서의 의미가 약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이 가는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영흥·함흥은 조선건국후부터 “풍패”로 지칭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에 반해 전주를 풍패로 칭하는 기사는 임진왜란 후 조선후기에 처음 나온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에 “풍패”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세종대 19년(1437) 기사이다. 북방에 나가 있던 김종서가 세종에게 북방의 형세를 아뢴 글에 “풍패” 기사가 처음 나온다.

“역대의 제왕은 창업한 땅을 중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으니, 한나라 고조 유방(劉邦)의 풍패(豐沛)와 당나라 고조 이연(李淵)의 진양에서 가히 볼 수 있습니다. 선조의 땅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며, 창업한 땅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않으면, 선조가 이룩하여 놓은 일을 계승하는 자손이 있다고 하겠으며, 선조의 뜻과 업을 계승하여 그 공훈[前烈]을 잇는다고 하겠습니까.”(『세종실록』, 세종 19년 8월 6일 계해)

2) 전주역사박물관, 『국역 조경묘의』, 2013 ; 이동희, 「『조경묘의』로 본 조선왕실의 시조 사당 조경묘」, 『조선왕실의 뿌리 조경묘와 조경단』(도록), 2011 및 『국역 조경묘의』, 2013. 『조경묘의』 국역은 김순석·김영미·김희경·문미애·배경옥·신용권 등이 담당하였다. 이충규는 『조경묘선생안』을 중심 자료로 하여 조경묘 건립과 운영을 살폈다.(『조경묘 운영과 선생안』, 전주대 석사논문, 2011).

3) 漢을 창업한 劉邦은 沛縣 豐畚 人이다.

이 글에서 김종서가 동북면 일원을 풍패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새왕조 창업의 땅 풍패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동북면을 풍패로 직접 지칭한 것은 세종 25년 7월 함경감사 정갑손이 올린 장계에 처음 나온다.

“본도(함길도)는 우리 조정에 있어서 한나라의 **풍패(豐沛)**와 같아서, 원주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성조(聖祖)를 추대하여 왕업을 이룩하게 한 자들입니다.”(『세종실록』, 세종 25년 4월 7일 임진)

함길도관찰사 정갑손은 세종에게 장계를 올리면서 함길도를 풍패라고 하고 있다. 그해 10월에는 세종이 함길도가 5진(五鎭)에 들어와 사는 문제로 소요스러운 것에 대해 관찰사 정갑손을 책망하면서 “함길도는 조종(祖宗)께서 왕업을 일으킨 땅이어서 실로 주나라의 빈기(邠岐), 한나라의 풍패(豐沛), 당(唐)나라의 태원(太原)과 같고 다른 도와는 견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⁴⁾ 세종도 영흥함흥이 속한 함길도를 창업의 땅 풍패로 인지하고 있다.

동북면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땅을 풍패로 여겼다. 이시애난 때 함길도 길주 군민들이 이시애를 두둔하면서 아뢴 글에 “이제 유서를 받고 엮드려 성지(聖旨)를 살피니, 그옥이 생각하건대, 본도는 풍패(豐沛)의 고향이며, 태조(太祖)께서 용흥(龍興)한 땅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한가지로 하였으니, 본도가 망하면 종사(宗社)가 위태하고, 종사가 위태하면 본도가 망하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합니다.”라고⁵⁾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건국직후부터 국왕을 비롯해 조정의 중신들이 영흥과 함흥을 비롯한 동북면 일원을 왕조가 일어난 풍패로 인식하였으며, 동북면 사람들도 풍패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동북면을 풍패로 인식하는 기사는 이외에도 조선전기의 실록에 지속적으로 나온다.

동북면 풍패의 범위도 태조가 태어난 영흥만이 아니라 그와 익조·도조·환조가 살았던 함흥, 넓게는 함길도 일원을 풍패로 인지하고 있다. 성종 17년 의영고 영(義盈 庫令) 윤파(尹坡)가 아뢰면서 “함흥은 바로 국가의 풍패의 고향으로서 조종의 능침이 있는 곳입니다. [威興乃國家豐沛之鄉 祖宗陵寢所在]”라고⁶⁾ 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이시애난 때 길주신민들이 자신들을 풍패의 백성들로 언급하였는데, 세조가 이시애난을 평정하고 적개공신들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길주출신 적개공신 길성군 허유례에게 “경은 풍패의 고향에서 출계(出系)하여 금려(禁旅)에 뽑혀서 보충되었도다.”라고 치하하고 있다.⁷⁾

6진일대도 풍패로 인식되었다. 선조 38년 건퇴 싸움에 패하고 거짓 보고한 서성과 김종득을 사헌부가 논핵하면서 “육진 일대는 풍패이므로 그 지역은 지키지 않을 수

4) 『세종실록』, 세종 25년 10월 24일 을사

5) 『세조실록』,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6) 『성종실록』, 성종 17년 2월 20일 병신

7) 『세조실록』, 세조 13년 11월 2일 갑자

없고, 그 곳의 백성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다.⁸⁾

세조 13년 이시에 난을 평정하면서 함경도 사람들에게 내린 유서에서, “…다만 전에 내린 유서에 위협당하여 따르는 자는 치죄(治罪)하지 말라고 한 것은 풍패(豐沛)의 고을 백성으로 하여금 봉적(鋒鏑)에 잘못 걸려서 옥(玉)과 돌[石]이 함께 불타버리도록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라고⁹⁾ 하고 있다. 세조가 함경도 일도를 풍패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광해군 즉위년 비변사에서 함경감사 장만의 진폐 차자에 대하여 회계하면서 “관북 지방은 비록 풍패의 고장이기는 하나 비유하자면 사람의 지체이고, 하삼도와 경기도는 국가의 복심이다”라고 하였다.¹⁰⁾ 관북은 함길도일원을 가리키는 말로 결국 함길도를 풍패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삼도 전라도는 국가의 복심이라고 하고 풍패라고는 하지 않고 있다.

전주를 조선왕조실록에서 풍패라고 칭하는 기사는 조선후기 광해군대에 처음 등장한다. 광해군 6년(1614) 9월 사헌부에서 안송헌의 직을 체차할 것을 청하는 기사이다.

“성조(聖祖)께서 처음 기틀을 닦았는데, 국가의 운이 중흥(中興)되어 진전(眞殿)을 중건해서 수용(睟容)을 도로 봉안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과 그 경사를 함께 하고자 **풍패지향(豐沛之鄉)**에서 특별히 과거를 실시하니[與衆同慶, 特設一科於豐沛之鄉],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택일(擇日)을 반포하지 않았는데 시제(試題)를 먼저 내어 지례 시소(試所)에 보낸 것은 자못 과거의 떳떳한 규정을 어겼다고 여깁니다. 따로 근시(近侍)를 보내어 다른 시제로 고쳐 가지고 가서 그날 시제를 열어 시험보이게 하소서.”[『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군 6년 9월 11일 경신]

어진을 모신 진전을 중건하고 풍패지향에서 특별히 과거를 실시하는데 안송헌(안용)이 시제를 미리 시소에 보낸 것을 문책하라는 청이다. 광해군 6년에 경기전을 중건하고 전주에 과거시험 별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주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사헌부가 말하는 풍패는 곧 전주이다.

이후 전주를 풍패지향이라고 칭한 기사는 인조 6년(1628) 기사에 등장한다. 속오군에 대해 도체찰사부 종사관 김반이 올린 서계에 대해 비국이 임금에게 아뢰면서

“그리고 전주(全州)의 고을은 보장(保障)이 될 뿐만 아니라 풍패(豐沛)의 고향이니 진실로 백성에게 폐단이 되는 것이 있으면 특별히 감면을 허락해야 됩니다.”

라고 하여¹¹⁾ 전주를 풍패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들어와 전주를 풍패지향으로 지칭하는 기사가 처음 등장하여 이후 영흥·함흥일원과 함께 풍패지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리하여 영조는 “만약

8) 『선조실록』, 선조 38년 5월 29일 임인

9) 『세조실록』,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10) 『광해군일기』, 광해군 즉위년 8월 16일 경오

11)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28일 경신

풍패(豊沛)를 물으면 함흥(咸興)과 전주(全州)가 한가지이다.“라고 하였다.¹²⁾ 조경묘 창건은 이런 조선후기 조선왕조의 풍패인식에 토대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풍패 기사 등재여부뿐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실록 풍패기사의 추이로 볼 때 조선초에는 영흥·함흥을 비롯한 동북면 함경도 일원을 풍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전주에 대한 풍패 인식은 조선초부터 표방은 하였지만 조정에서의 인식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추이를 추정해 보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풍패지향으로서 전주에 대한 조정의 관심이 높아졌고, 영조조대를 거치면서 풍패로서 전주의 위상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가, 풍패로 말하면 함흥과 전주가 한가지라고 한 것은 전주의 높아진 풍패로서의 위상을 말해준다. 영조대가 되면 풍패로서 전주와 함흥일원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인식되었고 이후 점차 함흥일원 보다 전주를 풍패로서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후기 풍패로서 전주에 대한 조정의 인식이 높아진 것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가의 보장지처로서 전주와 전라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함께 가계기록이 성행하면서 시조와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조경묘 창건 논의와 건립

조경묘는 영조 47년(1771) 경기전 복원에 창건되었다. 이 때 조경묘가 건립되게 된 것은 영조 41년(1765)에 종친인 학림군 이육(鶴林君 李燾)이 올린 상소에서 비롯되었다.¹³⁾ 그 상소의 개략을 『영조실록』을 통해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아조(我朝)의 시조(始祖) 사공공(司空公)의 묘소[衣履之藏]가 전주의 건지산(乾止山)에 있으니, 청컨대 봉축(封築)을 더하고 따라서 숭봉(崇奉)하여 추원 보본(追遠報本)하는 정성을 깃들게 하고 그옥이 동지(冬至)에 조상께 제사지내는 뜻에 부합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숨김없이 말한 것으로 가상하여졌으나, 다만 유전(流傳)한 내용이 상세하지 못한데 원묘(原廟)로 하는 것은 비례(非禮)라고 하여 윤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경묘(肇慶廟)를 설치한 것은 이에서 조짐(兆朕)이 되었다.(『영조실록』, 영조 41년 4월 14일 기미)

영조 41년 학림군 이육이 시조 사공 이한의 묘소가 건지산에 있다고 하니 묘역을 조성하고 해마다 제를 지내자고 요청하였다. 즉 이육은 시조 이한의 능이 있다고 전하는 건지산에 묘역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 사당을 건립하자고 하였다.¹⁴⁾ 영조는 이 상소에 대해 가상하다고 하면서도 시조묘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분명치 않은데 묘역을

12) 『영조실록』, 영조 44년 10월 8일 임술.

13) 조경묘 건립과정에 대해서는 이육, 앞의 논문 참조.

14)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4월 14일 기미 ; 『영조실록』, 영조 41년 4월 14일 기미

조성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보듯이 조경묘 설치는 학림군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

건지산에 시조 묘소가 있다는 근거가 분명치 않아서 이육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시조묘 건립 문제는 6년 후인 영조 47년(1771)에 봉상시정 이정중(奉常寺正 李廷重)에 의해 다시 거론되었다. 이정중은 이육과 달리 묘역 조성이 아니라 제단을 조성하고 제사를 지내자고 하였다. 시조를 위한 제단과 시제(時祭)가 없는 것은 성조(聖朝)에 흠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¹⁵⁾

이에 영조는 학림군 상소 때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예조에 명하여 대신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였다. 영조는 이전과 다르게 제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신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등은 이정중이 주장한 단(壇)의 형식은 시조에 대한 제사 예법이 아니며, 제후들의 시조를 제사한 예가 없다고 하여 시조제사를 반대하였다.¹⁶⁾

같은 해 10월 6일, 전주이씨의 후예인 이득리(李得履) 등 칠도(七道)의 유생 천여 명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이득리는 이전의 이육과 이정중과 달리 건지산 묘역과 별개로 시조에 대한 제사를 주창하였다. 이들은 묘소의 위치가 부정확하므로 묘역을 조성할 수 없고, 단선(壇墠)의 논리도 예법에 적절치 않지만, 제후가 시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가능한 일이라는 이전의 주장들과는 다른 논리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중용(中庸)』에 나오는 주공의 예와 송대 유학자들의 예설을 들어 시조제사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천자는 천자의 예로, 사서인(士庶人)은 사서인의 예로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데 어째서 제후만 시조의 제사를 지낼 수 없느냐고 반문하였다.¹⁷⁾

영조는 선파(璿派) 후예들이 소를 올린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시조를 종묘에 모시는 일은 어렵겠지만, 이것은 전주에 경기전과 같은 묘를 하나 더 짓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¹⁸⁾ 영조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 시조를 살피는 것에 감히 소홀하지 않은데, 하물며 국조의 시조이겠는가?”라고 하여, 문중들이 자신의 시조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것을 들어 왕실의 시조묘 건립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¹⁹⁾ 이득리 등의 상소로 시조 사당 건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적극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영조는 이득리의 상소가 있는 다음 날 10월 7일에 조경묘 건립을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여 그 청한 것이 진실로 어렵지만, 이미 두 차례 문의(問議)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감히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불만의 뜻이 있으면, 이는 해동(海東)의 신자(臣子)가 아니다. 이미 본주(本州)로 정했으면 단(壇)을 설치하고 묘(廟)

15)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1월 5일 정축 및 1월 12일 갑인 ; 이육, 앞의 논문, 169~172쪽

16) 위와 같음

17)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10월 6일 계유

18) 위와 같음

19) 『位版造成都監儀軌』, 傳教秩, 辛卯十月初六日 ; 이육, 앞의 논문, 177쪽에서 재인용.

를 세우는 일을 일체로 하도록 하라. 내가 나이 장차 80세가 되어 거의 13세의 얼굴을 뵈은 바가 있는데, 이제 하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특별히 시임대신·원임대신·예관을 불러 하교하고, 또 충자(沖子)에게 명하여 내일 아침 창덕궁에 나아가 나를 대신해서 아뢰게 할 것이니, 삼국 때 시조묘(始祖廟)를 세웠던 전례에 의거하여 본주 경기전 곁에 묘를 세우고, 위판(位版)은 ‘시조 고 신라 사공 신위(始祖考新羅司空神位)’라고 쓰고, 비(妣)의 위판은 ‘시조비 신라 경주김씨(始祖妣新羅慶州金氏)’라고 쓰고, 묘호는 ‘조경묘(肇慶廟)’라고 하되, 제물은 경기전의 전례에 의거하고, 묘관(廟官) 또한 경기전의 예에 의거하여 서울에서 차송(差送)하도록 하라. 아! 이날의 이 일은 오르내리시는 영령께서 지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경사를 합해서 과거를 설행하되, 이름을 ‘양경 정시(兩慶庭試)’라고 하여 20인을 뽑을 것이며, 고유문(告由文)·반사문(頒赦文)을 첨서(添書)하여 내리도록 하라.(『영조실록』, 영조 47년 10월 7일 갑술)

영조는 왕실의 시조묘 건립을 반대한다면 신료가 아니라고 하고, 이제 고령의 나이 80에 이를 건립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느냐고 하면서 조경묘 건립을 명하였다. 건지산 시조묘역 조성은 근거가 분명치 않아 시조사당 건립을 추진해 간 것이다. 규모와 관리운영은 조경묘를 삼국 시조묘에 의거하여 건립하고, 조경묘의 제물과 묘관은 경기전 전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시조 이한은 삼국의 시조처럼 왕이 아니고, 또 경기전 태조처럼 창업 군주로 아님에도 이에 준하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종계변무(宗系辨誣)와 조경묘 창건 등 두 가지 경사를 축하하는 과거시험을 ‘양경 정시(兩慶庭試)’라는 이름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종계변무는 명나라 역사에 태조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후예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선조 때에 이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태조의 종계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명에 요청하였다. 이를 승인받은 회자(回咨)가 이해 9월에 왔다. 이때의 종계변무 문제는 이를 말한다.²⁰⁾

그리하여 10월 12일, 전라감사 윤동승과 전주판관 심공유가 조경묘를 건립할 터를 살폈으며, 19일에 예조판서 정홍순이 이를 살피기 위해 전주에 내려왔다. 21일에는 조경묘를 건립할 터를 닦고[開基] 고유제를 거행하였으며, 28일에 주춧돌을 놓았다[定礎]. 그 다음 달인 11월 7일에 기둥을 세우고 상량을 올렸다. 11월 14일, 전라감사 윤동승이 대간의 탄핵을 받고 체직되자 새 전라감사 홍낙성이 일을 대신하였으며, 예조판서가 일을 살피기 위해 다시 내려왔다. 그리하여 11월 24일에 조경묘를 완공하였다. 10월 21일에 터를 닦고 11월 24일에 완공하였으니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 셈이다.

이렇게 조경묘 건립이 빠른 시일에 완공된 것은 같은 해 전라감영 선화당 중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영조 47년(1771) 전라감사 윤동승이 퇴락한 감사의 집무처 선화당을 중건하였는데,²¹⁾ 이 때 조경묘를 건축할 수 있는 재목들이 준비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지 않고는 조경묘를 건립하기로 결정한지 두어 달만에 사당 건물을 완

20) 이욱, 앞의 논문, 195쪽.

21) 『완산지』, 공해, 선화당

성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선화당 중건 과정에서 이미 조경묘 건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조경묘 신위(위패)는 10월 22일에 한양 자정전에서 출발하여 11월 1일에 전주 경기전에 임시 봉안되었고, 11월 26일에 조경묘에 봉안되었다.²²⁾ 전주에 도착한 후 한 달여가 지난 뒤에 조경묘에 봉안한 것은 사당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과 축문은 신위가 출발한 후인 26일에 내렸다.

신위봉안 행렬이 한양을 출발하여 전주에 도착하기까지 8박 9일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일 한양 자정전 출발, 과천 숙소 → 23일 미근당(彌勤堂) 주정(晝停), 수원 숙소 → 24일 진위(평택) 숙소 → 25일 직산 숙소 → 26일 천안 숙소 → 27일 덕평 주정, 광정 주정, 공주 숙소 → 28일 이성(논산) 숙소 → 29일 은진 주정, 여산 숙소 → 11월 1일 삼례 주정, 전주 경기전 별전 봉안 → 26일 진시(오전 7시~9시) 조경묘 봉안

주정(晝停)은 임금이 낮수라를 들기 위해 머무는 것을 말한다. 봉안경로를 보면, 한양에서 과천, 수원, 평택, 직산, 천안, 공주, 논산, 여산, 전주로 이어지는 거의 직선 노선을 따라 봉안되고 있다. 신연이 숙소에 이르면 객사에 봉안하고 주정소에 객사가 없는 곳은 악차(幄次)에 봉안하였다. 행렬이 도 경계를 넘으면 해당 도의 감사가 교대하여 인도하였다.

조경묘에 위패를 봉안한 다음날인 11월 27일 종계변무와 시조묘 창건을 축하하는 양경정시(兩慶庭試)를 베풀어 20여명을 선발하였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시조와 시조비 가문인 전주이씨와 경주김씨 급제자가 없자, 다음날인 28일 양 성씨를 대상으로 다시 과거시험을 치러 4명을 선발하였다. 이 시험을 완경과(完慶科)라고 한다. 완산의 첫 자 '완'자와 경주의 첫 자 '경자'를 따서 붙인 시험명이다.²³⁾

본래 영조는 삼국의 시조묘와 같은 크기로 조경묘를 조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김치인이 당시 전(殿)으로 불리는 역대 시조묘 보다는 작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칸 수는 동일하게 하되 크기는 이보다 작게 하는 것으로 건축하였다. 제물과 제관 등은 경기전 예에 따랐다. 조경묘 관리 책임자인 참봉은 경기전과 달리 개국공신과 광국공신(光國功臣)의 후예를 임용하도록 하였다.²⁴⁾ 개국공신은 조선건국에 기여한 공신이고, 광국공신은 명나라 국사에 잘못 기록된 조선왕실의 종계를 바로잡은 공신을 말한다.

22)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11월 26일 무오

23) 전주이씨와 경주김씨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하여, 본관의 앞자를 따서 완경과라고 하였다. 여기에 합격한 자들은 3차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권을 주었다. 과거시험은 2차 시험 복사에서 최종 급제자를 정하고, 3차 시험 전시에서는 순위를 정했다. 그러니까 완경과 급제자는 실질적으로는 급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복 장수출신의 김성갑이 완경과에 급제하고 2년후인 1773년 증광시 3차에 응시하여 흥패를 수여받았는데 현재 그 흥패가 영조 어필과 함께 문중에 전해지고 있다.

24) 이육, 앞의 논문, 194쪽.

IV.조경묘 창건의 역사적 의미

조선왕실 최초의 시조 사당 조경묘 건립은 영조 41년(1765) 종친인 학림군 이육의 상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영조 47년 1월 이정중의 주청을 거쳐 그해 10월 전주 이씨의 후예 이득리를 비롯한 7도의 유생 천여 명이 올린 시조 사당 건립을 청하는 상소로 급진전 되어 이루어졌다. 즉 조경묘 창건은 영조 41년 이후 본격화 된 것이다.

하지만 시조 이한을 존송하는 문제는 사실 영조 5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그 시작은 옹주방에서 건지산을 절수하려 하자 전라감사 이광덕이 이를 거절한 것에서 불거졌다. 옹주방에서 궁방전으로 건지산을 떼어 가려 하자 이광덕이 치계(馳啓)하여, 건지산은 경기전의 주맥으로 이 땅이 비옥해 차지하려는 자들이 여럿 있었으나 모두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일체의 경작을 금지시키되 평지는 개간하여 태조 진전의 적전(藉田)으로 삼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다.²⁵⁾

이런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영조 5년 지경연사 윤순이 건지산 시조 묘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상세히 아뢰겠습니다. 대체로 건지산은 둘레가 매우 넓어 전주(全州)를 빙 둘러 에워싸고 있고, 그 산기슭도 높고 험하지 않으면서 밭이랑처럼 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조종조에서 절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려둔 것은 아마도 그 까닭이 있는 듯합니다. 이 산의 아래 기슭에는 옛 무덤이 하나 있는데, 예로부터 운운(云云)하는 말이 있었고 사면의 봉표(封標)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중대한 일이면서도 근거할 만한 기록도 없어 전후로 도신이 감히 장계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운하는 말은 지금까지 고로(古老)들이 서로 전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광덕은 연소한 사람이라 이 일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당초에 이광덕이 만약 이렇게 전하여 내려오는 말을 들었더라면 농사를 짓도록 장계로 청할 리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호조에 소속시켜서는 안 되고, 전례대로 진폐전(陳廢田)으로 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나도 듣지 못한 일이다. 경은 어찌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가?”하자, 윤순이 아뢰기를, “신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옛 무덤은 과연 거대했습니다. 사면에 봉표가 있는 것이 실로 우연이 아니었고, 고로가 서로 전하는 말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산이 어찌 지금까지 공한지(空閑地)가 되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호조에 소속시켜서도 안 된다. 전례대로 진전(陳田)으로 편입하도록 분부하라.”고 하였다.

윤순은 조종조에서 건지산을 절수하지 않은 것은 오래된 거대한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절수하여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고 건의하였다. 영조는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 무덤이 시조 이한의 묘소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영조가 건지산을 절수하지 않았고, 이후 이육의 상소에서 건지산 묘소를 시조묘로 연계시킨 것을 볼 때 윤순이 말한 묘소는 시조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25) 『영조실록』, 영조 5년 4월 2일 병자

그런데 그 시점이 영조 4년 무신난(戊申亂)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조 4년에 소론들의 주도하에 밀풍군 탄을 앞세우고 영조를 내치려는 반란이 일어났으며, 전라도는 무신년 이인좌난의 거점의 하나였다. 이후에 전주 건지산의 시조묘역 조성이 거론된 것은 이를 통해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해 혼돈된 정국을 타개하고 왕권의 안정을 모색하려는 차원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영조가 미전한 무수리 최씨 소생이기에 혈통은 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후 영조 20년(1744)에 가서 또 건지산 시조묘역이 언급된다. 영조가 목조 윗대의 능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중신들에게 묻자,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유엄이 일찍이 건지산에 2개의 무덤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고, 송인명은 봉역이 크다고 한다고 답하였다.²⁶⁾

이때의 정국을 보면, 영조 17년에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여 경종 2년 목호룡의 고변으로 인한 임인삼수옥(壬寅三手獄)을 무옥으로 규정하고 노론 4대신 등 노론계 신료들을 복권시켰다. 노론의 집권 기반을 확고히 해준 것인데, 신유대훈은 결국 영조즉위후 이어진 경종독살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조 17년에는 재상권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질서를 찾으려는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조전랑의 통청권과 한림의 회천권을 폐지하고, ‘기강재상(紀綱在上)’의 논리를 내세워 재상권을 강화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강재하(紀綱在下)’의 사림 정치 골격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영조 4년 무신난에 이어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영조 17년의 신유대훈과 권력구조 개편 이후 또 다시 시조 묘역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이런 시조 존숭 문제가 거론 되는 때가 예사롭지 않은 점은 영조 47년 조경묘 창건 때 그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조경묘 건립은 영조 41년(1765)에서 비롯되어 6년후 영조 47년에 완수되었다. 그런데 조경묘 건립 논의가 있기 직전인 영조 38년(1762)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임오화변(壬午禍變)이 일어난 해이다. 임오화변으로 영조는 이유야 어쨌든 자식을 죽인 아버가 되었다. 정국은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한 일파인 부홍파(扶洪派, 北黨)와 사도세자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 홍봉한 일파를 공격하는 공홍파(攻洪派, 南黨)의 격렬한 대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정국하에서 시조 사당 건립이 제기되고 조경묘가 창건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조대 국정운영의 중요 고비마다 시조사당 건립 내지 시조묘역 조성이라는 조선왕실의 시조 존숭사업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조 4년 소론들이 영조를 폐위시키려 했던 무신난, 영조 17년 그간 영조를 괴롭혀온 경종 독살의 문제를 일단락 짓는 신유대훈과 조선이 추구한 사림정치의 골격인 기강재하의 권력구조를 기강재상의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정국,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가(私家)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 왕가(王家)에서 벌어진 임오화변 직후에 시조묘 건립이 다시 제기되고 몇 년후 조선왕조 최초의 시조 사당 조경묘가 건립되었다.

이는 곧 시조 존숭사업과 영조대 정국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26)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1월 4일 임오

다. 결국 조경묘 창건은 영조가 시조 존숭사업을 내세워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정국을 타개해 가는 방책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묘 창건의 보다 본질적인 면은 영조대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조는 조선건국후 3백여년이 넘게 지나 변화된 사회에 맞게 조선왕조를 재편하고 이를 통해 왕조의 중흥을 꿈꾸었다. 이를 위해 영조는 사림정치의 골격인 이조전랑의 통청권을 혁파하여 기강재하(紀綱在下)의 권력구조를 재상권이 강화된 기강재상(紀綱在上)의 체제로 개편하여 당쟁을 종식시키고 대탕평정책을 완수하려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균역법을 실시해 양역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하였다.

조경묘 창건은 이런 영조대 조선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조경묘를 창건하여 당시 가문 중시 풍조에 맞추어 조선왕실의 계보를 시조를 중심으로 재정립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는 가문이 중시되고, 그 가문은 시조가 정점을 이루는 구조이다. 족보는 시조를 정점으로 후손들이 편제된 가계기록이다. 조선은 시조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시조묘역을 조성하고 시조를 존숭하는 사업들이 가문별로 펼쳐졌다. 영조대 당시에도 1764년 윤관의 묘소를 두고 파평윤씨와 청풍심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왕실도 왕실가의 권위와 위엄을 보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시조가 필요했다. 시조묘의 건립은 변화된 사회에 걸맞게 왕실가문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영조는 전주이씨 종중과 종친들과 함께 이에 관심을 가졌고, 그 치세 말에 시조의 묘역은 조성하지 못했지만 사당을 창건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영조는 조선을 재편하여 시대에 맞게 바로 세우는 정책들을 펼쳤고, 조경묘 건립은 그 하나인 왕실가문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왕실가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조경묘 창건은 시조를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 바로 세우기의 하나였다. 사실 영조대 왕실가와 관련해 조경묘 창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태조가 이인임의 후손이라는 잘못된 중국측의 기록을 바로잡는 종계변무 문제가 선조대 정리되었다가 영조대에 다시 불거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영조는 이를 해결하고 조경묘 창건과 종계변무가 일단락된 것을 축하하는 완경과를 설치하였다.

조경묘 창건은 전주 지역사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조 사당 건립은 조선왕조의 발상지, 풍패지향으로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공고히 해 주었다. 조경묘의 창건은 조선창업을 시조 이한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선 건국이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조 이한으로부터 대대로 덕을 쌓아서 이루어진 수덕(樹德)의 역사라는 것을 표방한 일이었다.²⁷⁾ 조상 대대로 공을 쌓아서 태조대에 새 왕조를 창업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조경묘 창건과 수덕의 논리로 조선 창업은 전주에 살았던 시조 이한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제는 전주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왕실의 아득한 고향이 아니라 조선창업이 시작된 곳이 되었다. 조경묘 창건으로 전주는

27) 『御製樹德全編』(장서각) “오호라! 400년 해동조선이 (선조의) 적덕누인에서 비롯하였음을 이 조경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이육, 앞의 논문, 186쪽.

명실공히 조선창업의 땅이 되었고 이에 따라 풍패로서 전주의 위상이 격상되었다.²⁸⁾ 이런 논리는 당시 조선사회 전반에 통용될 수 있는 논리였다. 조선의 내노라 하는 사대부들이 시조를 중심으로 한 가문을 이루고, 시조를 가문의 정점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의 풍패로서 전주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영조 10년(1734) 전라감사 조현명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신하들의 반발에도 영조의 지원하에 전주성을 다시 쌓았다. 조현명은 영조의 측근으로 탕평책을 주도해간 인물이다. 전주성을 새로 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유사시 방어외의 문제와 함께 이곳이 왕조가 일어난 풍패임을 강조하였다. 풍패이므로 난리가 났을 때 쉽게 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조는 절반 넘게 허물어져 성곽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성을 대대적으로 다시 쌓아서 무신난으로 흔들린 통치권을 강화하고 조선왕조 근본의 땅으로서 전주의 위상을 갖추어 왕실의 위엄을 갖추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명은 전주성을 쌓고 그 정문인 남문을 명건루라고 이름 붙여서 영조의 덕을 칭송하였다.²⁹⁾

이로부터 30여년후 영조 43년(1767) 정해대화로 전주성이 불타자 전라감사 홍낙인은 남문과 서문을 새로 축조하고 그 이름을 각각 풍남문, 패서문이라고 하였다. 이 이름은 풍패에서 따온 것이다. 풍패에서 풍자를 따와 풍남문이라고 하고, 패자를 따와서 패서문이라고 하였다. 이때는 조정에서 조경묘 창건이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성문의 이름을 풍패에서 따와 붙인 것은 이런 조정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풍남문과 패서문 이름도 풍패로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한 조치로서 조경묘 조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목조 이안사와 관련된 호운석과 장군수 이야기도 영조대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 목조가 하늘에서 점지해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 설화는 1790년대 정조대에 편찬된 전주읍지에 처음 등장한다.³⁰⁾ 이 이전의 전주읍지가 전해지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조대에 전주를 풍패의 역사적 땅으로 강화해 갈 때 이런 이야기도 채록되고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영조는 전주성을 축성해 풍패로서 전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통치권의 기반으로 전주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였으며, 전주성의 남문과 서문을 각각 풍남문과 패서문이라고 이름하고, 왕실의 시조사당 조경묘를 전주에 창건하여 풍패로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왕실의 뿌리와 위엄을 탄탄하게 구축하려 하였다. 조경묘 창건은 시조와 가문이 중시된 사회를 맞이하여 시조를 중심으로 왕실의 계통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왕실가의 위엄을 세우려는 영조대 왕실가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전주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조선 창업이 시작된 땅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28) 이육은 태조에게 실제적인 고향은 함흥이었으며, 전주는 실제적인 고향이라기 보다는 여러 세대를 거쳐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판념적 고향이었다고 하였다.(이육, 앞의 논문, 168쪽)

29) 이희권·이동희역주, 『『전주부성축성록』 해제』, 『국역 전주부성축성록』, 전주역사박물관, 2010.

30) 『호남읍지』, 『전주읍지』편

V. 맺음말

조선건국과 함께 전주는 풍패지향이 되어 태조어진이 모셔졌다. 하지만 조선건국후 전주에 대한 풍패인식은 영흥과 함흥 일원에 비해 강하지 않았다. 영흥과 함흥 일원은 태조가 태어나고 살았던 곳인데 반해 전주는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였기 때문이다. 전주에 대한 조정의 풍패인식은 임진왜란을 거치고 가문중심 풍조가 일면서 조선후기에 강화되었다. 조경묘 창건은 전주에 대한 풍패인식의 강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경묘는 영조 41년에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영조 47년(1771) 경기전 북편에 건립되었다. 영조 47년 10월 7일에 시조 사당 건립이 결정되었으며, 21일에 터를 닦고 11월 24일에 조경묘를 완공하였다. 결정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완공까지 이른 것은 같은 해 전라감영 선화당을 증건하면서 목재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경묘를 영조말년에 건립하였지만 시조 존숭 사업은 사실 영조초반에 이미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영조 4년 무신난후 영조 5년에 시조묘역 조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영조 17년 신유대훈을 반포하고 이조전랑의 통청권을 혁파한 후 영조 20년 다시 또 시조 존숭사업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영조 38년(1762)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임오화변 후 시조 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조경묘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영조는 모계의 출신이 미천한 군주였다. 거기에다가 조선후기는 가문이 중시되는 사회였다. 영조는 이런 자신의 출신의 한계와 가문 중시 풍조하에서 국정운영의 고비 때 시조 존숭 문제를 들고 나와 왕실가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 정국을 타개하는 한 방편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경묘 창건의 본질적인 면은 영조대 국정운영의 큰 틀과 관련되어 있다. 영조대 정치는 변화된 조선후기 시대상황하에서 조선왕조 바로 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대탕평책을 펼치며 권력구조를 개편하였으며, 균역법을 실시하고 서자들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경제사회의 변혁을 단행하였다.

조경묘 건립은 이러한 조선왕조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조선후기 시조와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하에서 시조를 중심으로 왕실가를 재확립한 것이다. 영조는 시조사당을 건립하여 시조를 중심으로 왕실가를 재확립하고 왕실가의 권위와 위엄을 갖추려고 하였다. 모계의 혈통이 미천하고 자식을 죽여만 했던 영조로서는 시조묘 건립을 통한 왕실가의 재정립은 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조경묘 창건은 가문 중시 풍조하에서 왕실 바로 세우기였다.

시조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 창건으로 전주는 조선 창업의 땅이 되었다. 조경묘 건립으로 조선의 창업을 시조로부터 선조들이 덕을 쌓아서 태조대에 새왕조를 건국하게 되었다는 수덕(樹德)의 역사로 보게 됨에 따라 조선창업의 시작이 시조 이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되고 시조 이한이 살았던 전주는 조선창업이 시작된 땅이 되었다. 영조가 풍패로 말하면 함흥이나 전주나 같다고 한 것은 이처럼 높아진 전주에 대한 풍패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조선왕실의 시조사당 조경묘 창건은 영조의 조선왕조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시조를 중심으로 왕실가를 재확립하는 일이었다. 조경묘 창건으로 전주는 창업자 태조의 선조들이 살았던 땅에서 조선 창업의 땅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조경묘 건축과 문화유산적 가치

안선희*

< 목 차 >

- I. 머리말
- II. 건축 구성
- III. 정묘의 건축 특성
- IV. 조경묘 의례
- V. 맺음말

I. 머리말

조경묘(肇慶廟)는 전주이씨 시조(始祖)인 이한(李瀚)과 시조비(始祖妃)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전주이씨 왕실의 시조묘(始祖廟)로서 1771년(영조 47)에 창건되었다. 본래 왕조국가에서 시조묘는 나라를 건국한 창업주를 위해 세우는 사당이다. 그러나 조경묘는 창업주를 위한 사당이 아닌 왕실의 시조묘라는 점에서 역대 국가의 시조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조는 전주 건지산에 존재한다는 시조의 무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시조를 위한 사당을 건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조경묘 건립이 결정되자 건축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건축공사는 전라감영에서 담당하였으며 공사 기간은 1달이 조금 넘게 소요되었다. 그동안 영조는 공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경묘 제사는 나라에서 관장하는 제사로서 진전의 의례를 따랐다. 중사(中祀)에 포함되어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현재 조경묘에는 10동의 건물이 남아 있으며, 정묘 영역과 부속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묘 영역에는 외삼문, 내삼문, 정묘가 직선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정묘 앞마당에는 동익랑과 서익랑이 마주 보고 있으며, 내신문 좌우에는 동첨각과 서첨각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부속채 영역에는 문간채, 전사청, 재실이 있고 최근에 복원한 어정이 있다.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선 후기 조경묘의 건축구성은 「경기전조경묘도형(慶基殿肇慶廟圖形)」과 여러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경묘의』, 『조경묘경기전대수리등록』 등 관련 기록들이 잘 남아 있다. 이 사료들은 조경묘의 건립 과정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 조경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기록들과 현재 조경묘를 비교해 보면 정묘 영역은 큰 변화가 없으나 부속채 영역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경묘는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조경묘는 경기전, 오목대, 이목대, 조경단 등과 함께 풍패지향 전주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조경묘는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제례가 이어지고 있어 무형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현재 조경묘 영역은 사적 제 339호 경기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전과 조경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조경묘 정묘 일곽은 조선 후기 사묘(祠廟)의 건축 구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보물로 승격하여 지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조경묘와 관련된 사료들을 검토하고 현존하는 조경묘의 건축을 비교해 봄으로써 조경묘의 건축 특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건축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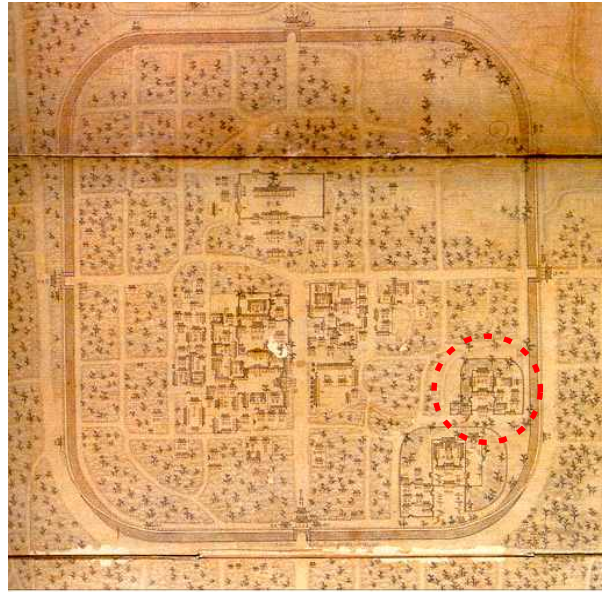
1) 입지 및 배치

조경묘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풍남동 3가 102)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동남쪽 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조경묘는 풍수적으로 볼 때 지세가 평평하고 밝으며 내맥(來脈)에 기(氣)가 대체적으로 좋은 곳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¹⁾

조경묘 남쪽에는 경기전(慶基殿)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한 건물로 1410년(태종 10)에 창건되었다. 경기전과 조경묘의 위치를 보면 조경묘는 경기전과 축을 같이하지 않고 북동쪽에 약간 비껴서 자리하고 있다. 경기전과 조경묘의 배치를 보면 마치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정침(正寢)과 사당(祠堂)의 배치구조와 유사하여 주목된다. 경기전은 태조의 공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진전(眞殿)으로 태조가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간주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조경묘가 건립될 당시 조선에는 주자가례가 널리 보급되었던 시기였고 당시는 예법(禮法)이 활발하게 적용되던 시기였다. 만약 경기전을 태조의 정침(正寢)이라고 간주하면 조경묘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사당은 정침의 동쪽에 둔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 승정원일기 74책 (탈초본 1323책) 1771년(영조 47) 11월 7일 계묘 / 上曰, 肇慶廟開基處基址, 果何如? 弘淸曰, 地勢平曠, 來脈有氣, 大體, 好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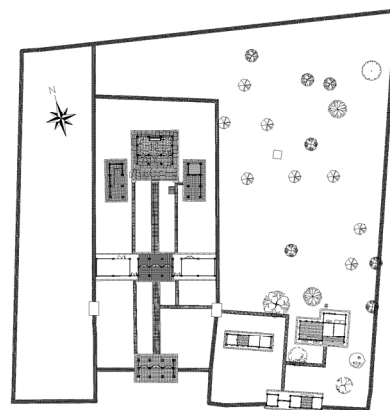


[그림 1] 조경묘의 위치 (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

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를 보면 조경묘는 정묘 영역과 부속채 영역, 시위 영역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중앙에는 신위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는 정묘 영역이 자리하고, 동쪽에는 제례를 준비하는 부속채 영역이 있으며, 정묘 영역의 서쪽에는 조경묘를 지키는 수문장과 시위가 지키는 시위 영역이 있다. 현재 조경묘는 정묘 영역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시위 영역은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부속채 영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완산부지도>에 보이는 조경묘



[그림 3] 조경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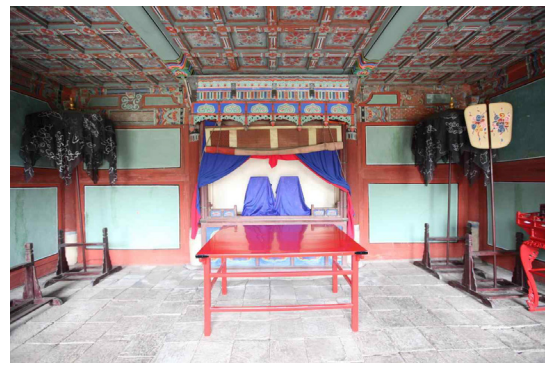
2) 정묘(正廟) 영역

정묘 영역에는 외삼문, 내삼문, 정묘가 직선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동익랑과 서익랑이 정묘 앞마당을 향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내신문 좌우에는 동첨각과 서첨각이 대칭으로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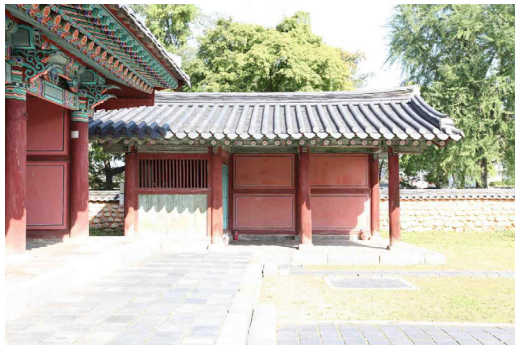
정묘는 정면 퇴칸을 개방하고 고주열에만 매 칸마다 문을 달았다. 나머지 삼면은 벽체로 구성하였다. 장식을 최대한 절제한 외관은 전형적인 유교 사당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감실은 후면 벽에 기대어 조성하였는데 창건 당시 한양에 있던 장인이 제작한 것이다.²⁾ 감실 앞에는 주렴을 달았고 안쪽에는 청색 장막이 쳐 있다. 감실 내부에는 ‘시조고신라공신위(始祖考新羅司空神位)’, ‘시조비경주김씨신위(始祖妃慶州金氏神位)’라고 쓴 위패를 봉안하였다. 위패의 양 쪽 옆에는 의장물을 나열하였다.



[그림 4] 정묘 정면



[그림 5] 정묘 내부



[그림 6] 동익랑 정면



[그림 7] 서익랑 내부

동익랑은 정묘 앞마당 동쪽에서 서익랑과 서로 마주보며 서향하고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북쪽 1칸은 바닥에 마루를 깔고 실로 구성하였다. 이 공간은 정묘를 수리할 때 임시로 신위를 봉안하던 이안청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서익랑은 동익랑과 건물의 규모와 형태는 같으나 내부 공간이 다르다.

2) 『승정원일기』 74책 (탈초본 1323책) 1771년(영조 47) 11월 24일 병진[경신] / 辛卯十一月二十四日辰時, 上命尹東昇進前, 問肇慶廟丹青與否及御榻好否, 東昇對曰, 適得京居匠手, 善爲之. 上曰, 與慶基殿, 何如? 東昇曰, 比慶基殿一樣.

서익량은 방이 없고 내부에 ‘ㄱ’자 형의 궤가 설치되어 있다. 이 궤는 제례를 지낼 때 제수를 올리기 전 잠시 제수를 보관하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정면과 남쪽면은 개방되어 있으나 본래는 남쪽면은 벽이 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신문은 정묘와 외신문 사이에 있는 문으로 의례를 행하는 공간을 구분하는 문이다. 내신문을 들어서면 정묘 앞마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신문은 평상시에 문을 열지 않고 제사가 있을 때만 문을 연다. 중앙의 문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며 제관은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나온다. 묘를 봉심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평상시에는 내신문과 좌우 첨각 사이에 있는 문을 사용한다.



[그림 8] 정묘에서 본 내신문과 동·서첨각

내신문 좌우에는 동첨각과 서첨각이 자리하고 있다. 동첨각은 신위를 옮길 때 사용하는 신연(神輿)을 보관하고, 서첨각은 채여(彩輿)와 향정자(香亭子)를 보관하는 기능을 지녔다.

외신문은 조경묘의 정문으로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외신문의 건축 형태와 규모, 구조는 내신문과 거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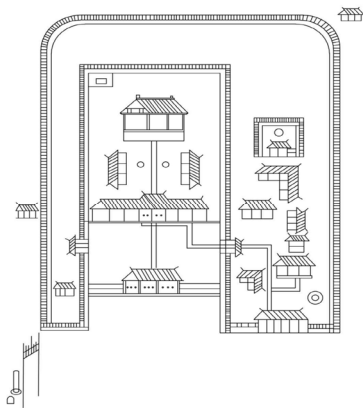
여러 건물 중에서 공포는 정묘와 내신문, 외신문에만 사용되었는데 정묘의 공포에는 첨차를 사용하여 내신문과 외신문보다 격식을 높였다.

3) 부속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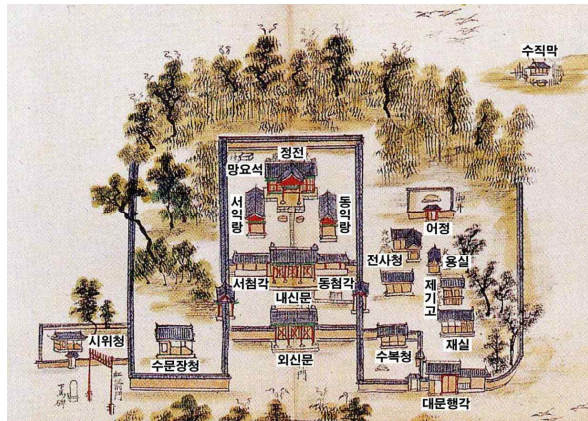
조경묘의 부속채 영역은 『조경묘지 및 소배의물구별성책(肇慶廟誌及所排儀物區別成冊)』, 『조경묘의(肇慶廟儀)』 및 여러 도형과 고지도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사료들에는 각 건물들의 칸수와 기능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872년에 작성한 『조경묘경기전수리등록』에는 당시 건축물에 대한 규모와 수리 범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조경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건물들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조경묘지 및 소배의물구별성책(肇慶廟誌及所排儀物區別成冊)』³⁾에 보이는 건축물은 모두 15동이 있다. 이 기록에서는 정묘를 정전(正殿)이 아닌 정묘(正廟)라고 칭하고, 정묘 앞마당을 향해 마주보고 있는 동익랑과 서익랑은 각각 동월랑과 서월랑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 비각과 비석은 없으며 용대석과 비문도 없다고 하였다. 내담장의 둘레는 171보(步), 외담장의 둘레는 301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조경묘지및소배의물구별성책(肇慶廟誌及所排儀物區別成冊)』에는 『조경묘의』와 천신(薦新)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정월령(正月令)은 생복(生鰯), 작설(雀舌), 4월령은 죽순(竹筍), 5월령은 대소맥(보리와 밀), 6월령은 햅쌀[新稻米], 8월령은 조홍시, 9월령은 석류, 10월령은 유자, 11월령은 당감자(唐柑子)와 금귤(金橘), 12월령은 당유자(唐柚子)를 올린다. 『조경묘의』에서는 4월령이 대소맥, 5월령이 죽순, 7월령이 조홍시, 11월령이 당유자, 12월령이 당감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 9] 『조경묘의』에 수록된 도형



[그림 10] <조경묘경기전도형>에 그려진 조경묘

『조경묘의』 <묘우제도(廟宇制度)>와 <제사제도(齋舍制度)>에 수록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조경묘의』에 수록된 조경묘의 건축물

	명칭	간수	내용
정묘 영역	정묘(正廟)	3칸	임좌병향(壬坐丙向, 남향)
	동서 익랑	각 3칸	
	내신문(內神門)	3칸	중앙은 정문이고, 좌우로 협문이 있다. 재관(齋官)은 서쪽 협문으로 들어오고 관찰사는 동쪽 협문으로 들어온다.
	동서 익랑	각 2칸	연·여(輦輿: 가마)를 봉안하는 곳이다.
	외신문(外神門)	3칸	구조는 내신문과 같다. 대소 관원은 모두 서문(西門)으로 들어온다.
부속 건물	전사청	6칸	
	헌관청(獻官廳)	3칸	향실(香室)이 모셔져 있다.
	재실	4칸	좌우에 방이 있고 가운데 마루 2칸이 있다. 오른쪽 방은 묘관의 거처이고 왼쪽 방은 제향 때 집사관이 드는 곳이다.
	관고(官庫)	2칸	재실의 북쪽에 있는데 누(樓) 위는 제기(祭器) 등의 물건을 보관하고, 누 아래는 두 명의 고수복(庫守僕)이 지키는 곳이다. 도수복 중에서 오래 창고지기를 겸하여 1년 동안 책임자가 된다.
	용실	2칸	
	시위청	3칸	정묘(正廟) 서쪽 담 밖에 있고, 집사와 총의 두 사람이 돌아가며 시위하는 곳이다.
	성상청(城上廳)		수복들이 각각 약간의 돈을 걷어 합 30냥을 모아 제사문 밖에 집을 샀으니 재관의 지응소(支應所)이다.
기타	어정		전사청 뒤에 있는 찬 우물인데 작은 담을 둘러쳤다.
	망예위		정묘 뒤뜰에는 망예(望瘞)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제사 후 축문을 묻기 위한 곳이다.
	홍살문		밖에는 하마비가 있다.
	드무		앞뜰 좌우에 각각 드무 1좌를 배열하되, 물을 채워 화재를 방지하며 겨울에는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탄다. 묘정 2좌, 누(관고) 앞에 2좌를 더 설치하여 물을 채워 화재를 방지한다.

『조경묘의』에서는 충의위수직방이 보이지 않고 대신 시위청이 있으며, 향대청을 헌관청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 성상청(城上廳)에 대한 기록이 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경묘의』에 수록된 <조경묘 수문장청 덕경재기(德慶齋記)>에 따르면 수문장청은 1866년에 처음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완산부지도>를 보면 부속채 영역에는 전사청(典祀廳), 용실(舂室), 연실(輦室), 제기고(祭器庫), 수복청(守僕廳), 재소(齋所)의 명칭이 보인다. 부속채 영역의 남쪽 담장을 보면 왼쪽에는 수복청으로 통하는 일각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재실로 통하는 문간채가 있다. 전사청과 수복청은 ‘ㄱ’자형 건물인데 전사청은 6칸, 수복청은 5칸으로 그려져 있다. 용실, 연실, 제기고, 재소는 모두 정면 3칸으로 그려져 있다. 『조경묘경기전수리등록』과 <완산부지도>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점은 별전(別殿), 연실(輦室), 유사청(有司廳)의 유무이다.

정묘 영역의 서쪽에는 수문장청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신문과 외신문 사이 마당에서 일각문을 통해 연결된다. 수문장청의 담장 너머 서쪽에는 담장에 둘러싸여 독립적인 영역을 이루고 있는 시위청이 있다. 홍살문은 조경묘의 전면 남서쪽에 축을 달리하여 세워져 있다. 그리고 정묘 영역의 북쪽과 서쪽에는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조경묘의』 <후원제도>에 따르면 1774년(영조 50) 원의손(元義孫, 1726~1781)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26채의 민가를 사들여 모두 헐고 담장을 개축하였다고 한다. 당시 나무를 많이 심으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품의(稟議)를 기다렸다는 기록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경묘경기전도형>에는 조경묘가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 도형은 화재 때 사용하기 위해 물을 담아 놓은 드무와 망요례(望燎禮)를 행할 때 사용하는 소축석(燒祝石)까지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다. 이 도형과 <완산부지도>는 정묘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 정묘는 정자각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러 기록을 보면 정묘가 정자각이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정묘의 모습을 제외하고 정묘 영역의 건물들은 <조경묘경기전도형>과 <완산부지도>가 거의 같다.

『조경묘경기전수리등록(肇慶廟慶基殿修理騰錄)』은 1872년 조경묘를 수리하면서 작성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명칭과 칸수, 수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전 9칸, 동익랑 3칸, 서익랑 3칸, 연실 3칸, 부연실 3칸, 내신문 6칸, 외신문 6칸, 별전 3칸, 내담, 제기고 2칸, 전사청 5칸, 용실 2칸, 재실 4칸, 또 2칸, 또 전랑(前廊) 6칸, 수문장직소(守門將直所) 4칸, 유사청 3칸, 어정(御井), 홍살문 1칸, 수복청 8칸, 수직막 3칸 등이다.

<완산부지도>와 <조경묘경기전도형>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부속채 영역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수복청은 정면 3칸 건물로서 담장을 구획하여 별도의 영역을 이루며, 일각문을 통해 부속채 영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동쪽 담장에 있는 일각문을 통해 재실영역과도 연결된다. 나머지 부속채 건물들은 문간채(행각)를 통해 진입이 이루어진다. 문간채는 대문이 솟을대문이고 동쪽 옆으로 한 단 낮게 2칸이 더 이어져 현재의 모습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재실은 정면 5칸으로 그려져 있다. 왼쪽 3칸은 대청이고 오른쪽 2칸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경묘의』에 재실

(齋室)은 '대량(大樑) 4칸인데 좌우에 방이 있고 가운데 마루 2칸이 있다. 오른쪽 방은 묘관의 거처이고 왼쪽 방은 제향 때 집사관이 드는 곳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과 <조경묘경기전도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칸 대청과 2칸 방으로 구성된 현재 재실과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실은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실 북쪽에는 제기고가 있는데 정면 2칸의 2층 건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조경묘지 및 소배의물구별성책』, 『조경묘의』 수록 <재사제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건물은 『조경묘의』를 보면 누(樓) 위에는 제기(祭器) 등의 물건을 보관하고, 누 아래는 두 명의 고수복(庫守僕)이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은잔 등 비싼 제기를 보관하기 있었기 때문에 수복이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기고의 북쪽에는 용실(舂室, 방앗간)이 있다. 용실의 북서쪽에는 'ㄱ'자형 건물인 전사청이 자리하고 있다. 전사청 앞에도 정면 3칸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명칭은 기록하지 않았다. 건물의 위치로 보면 <완산부지도>에서는 연실(輦室)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경묘의』에는 '헌관청(獻官廳)'에 대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헌관청은 3칸으로 향실(香室)이 모셔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헌관청은 <완산부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이다. 의례를 보면 재실에서는 헌관이 향축을 전달하는 전향례가 이루어진다. 향실이 모셔진 헌관청은 부속건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조경묘경기전도형(肇慶廟慶基殿圖形)>에 명칭이 기록되지 않은 건물은 헌관청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부 기록에서는 서재(西齋)에 대한 기록도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

정묘 영역의 서쪽에는 2동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명칭은 기록하지 않았다. <완산부지도>를 볼 때 그 위치는 수문장청과 시위청으로 볼 수 있다. 『조경묘의』를 보면 시위청은 3칸으로 정묘(正廟) 서쪽 담 밖에 있고, 집사(執事)와 충의(忠義) 두 사람이 돌아가며 시위(侍衛)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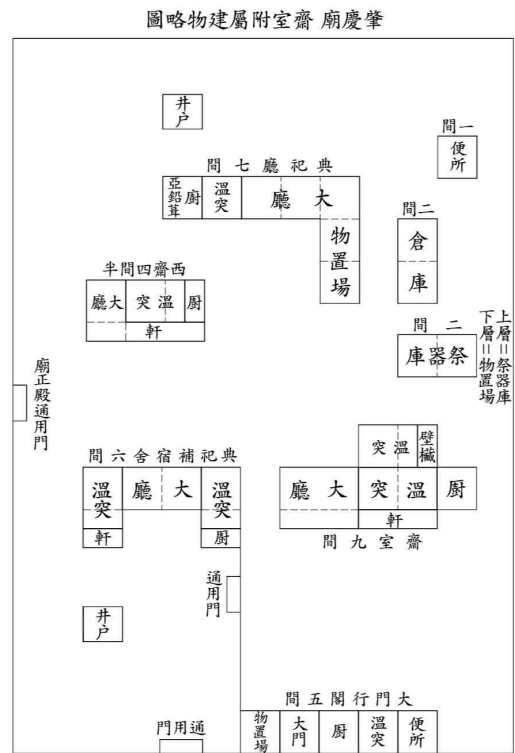
한편, 1936년에 조경묘를 수리하면서 작성한 배치도를 보면 부속채 영역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대문행각은 5칸으로 동쪽부터 변소, 온돌방, 부엌, 대문, 창고(물치장)로 구성되어 있다. 재실은 9칸인데 동쪽부터 부엌, 온돌방 2칸, 대청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돌방과 대청 앞에는 뒷마루가 시설되어 있다. 온돌방 뒤 쪽에도 2칸의 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방 동쪽에 벽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재실의 북쪽에는 제기고가 있다. 제기고는 2칸인데 윗층은 제기고이고 아래층은 물치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기고의 북쪽에는 2칸의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동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창고의 북쪽에는 변소 1칸이 있고 창고의 서쪽에는 'ㄱ'자형의 전사청이 자리하고 있다. 전사청은 7칸으로 몸채는 동쪽 3칸이 대청이고 그 옆으로 온돌방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엌에는 아연지붕(亞鉛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몸채의 동쪽간은 앞쪽으로 2칸의 물치장이 마련되어 있다.

전사청의 북쪽에는 우물이 있고 남서쪽에는 서재가 있다. 서재는 4.5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쪽 반 칸은 부엌이고, 1.5칸은 온돌방이며, 서쪽 1칸은 대청이다. 건물의 전면은 모두 뒷마루를 시설하였다.

재실의 서쪽에는 전사보가 거처하는 숙소[宿舎]가 있다. 이 건물은 ‘ㄷ’자형인데 6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앙 2칸은 대청이고 양쪽 날개부는 온돌방으로 구성된 대청형 건물이다. 온돌방 남쪽에는 부엌이라 기록되어 있다. 전사보 숙소는 재실과 담장으로 인해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전사보숙소는 밖에서 별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일각문이 있다. 전사보 숙소와 서재 사이의 서쪽에는 내신문과 외신문 사이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일각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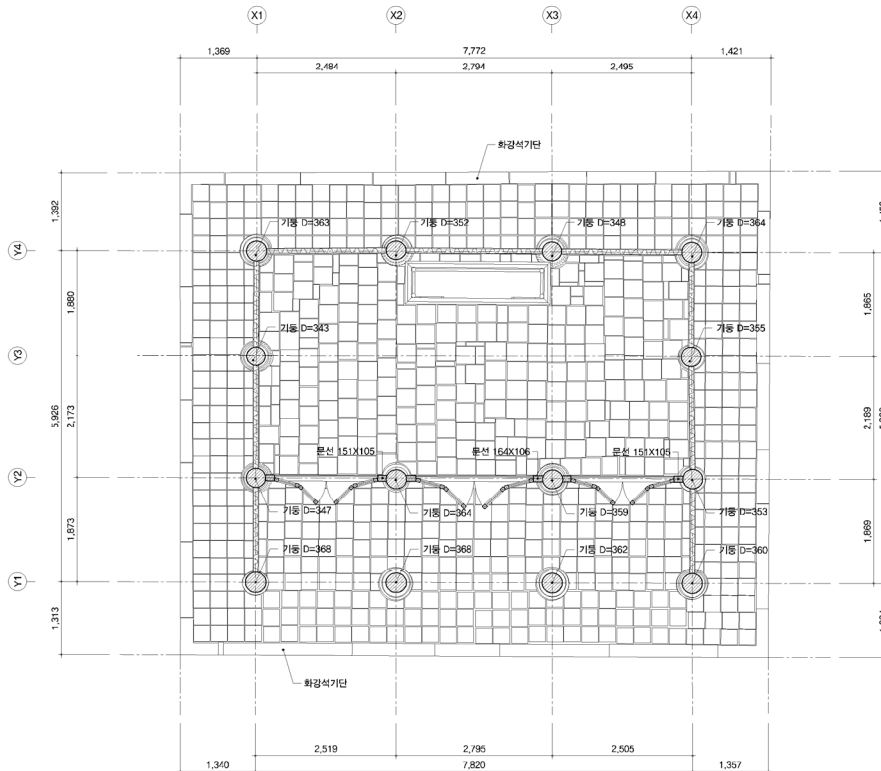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경묘는 정묘, 동익랑, 서익랑, 내신문과 좌우첨각, 외신문으로 이루어진 정묘 영역은 변화가 없었으나 부속채 영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1936년에 작성된 부속채 영역 약도

Ⅲ. 정묘의 건축 특성

정묘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집이다. 기단은 잘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하여 3단으로 조성하였다. 기단 앞에는 월대를 시설하였으며 초석은 잘 다듬은 원형초석을 사용하였다. 정면과 측면은 약 5 : 4의 평면비를 지니고 있다. 내부 중앙에는 벽에 기대어 감실을 설치하고 신위를 봉안했다. 바닥에는 모두 전돌을 깔았으며 양쪽 협간에는 의장물로 청개(靑蓋)와 채운선(彩雲扇) 1쌍을 나누어 진열하였다. 본래 의장물들은 더 많았으나 일부 멸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정묘 평면도

정묘의 간잡이를 보면 정면과 배면은 어칸을 9자(尺)로 넓게 하고 양 협칸은 8자(尺)로 어칸보다 1자(尺)를 줄였다. 측면에서는 정칸을 7자(尺)로 설정하고 앞칸과 뒤칸은 동일하게 6자(尺)로 설정하였다. 정면 어칸, 정면 협칸, 측면 정칸, 측면 협칸으로 가면서 기둥 간격을 1자(尺)씩 줄어들게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파련화반을 끼워 넣었는데 배면에서는 장식이 없는 방형화반을 끼워 넣었다. 창호는 정면에만 있는데 4분합 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탕에는 뇌록을 칠하였으며 삼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양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다른 건물들보다 높게 만들고 흰색의 양성바름으로 처리하였다.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위엄을 느끼게 하는 외관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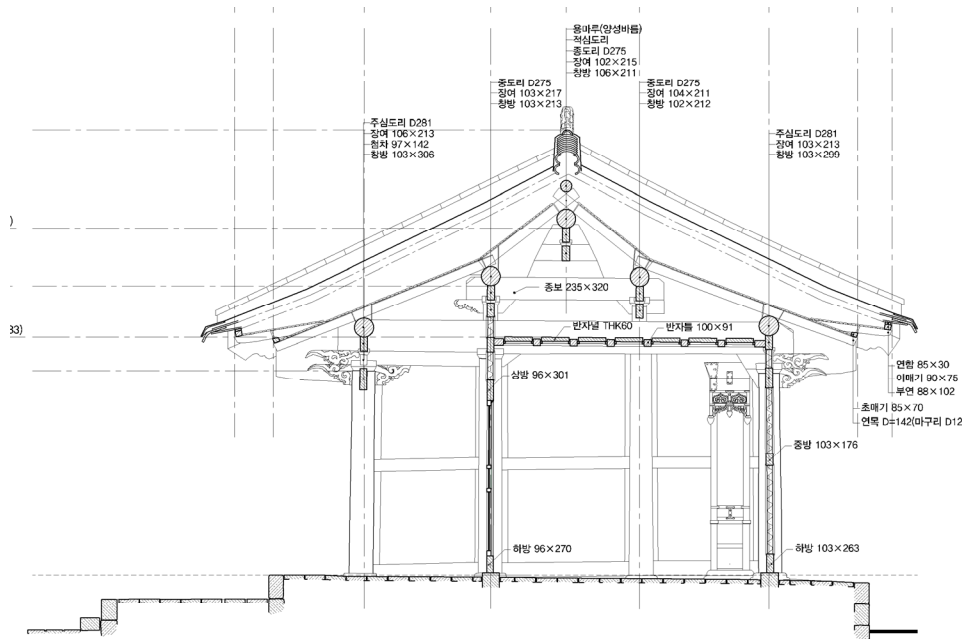
공포는 재주두가 없는 2익공 형식이다. 익공은 보아지의 기능을 겸하는데 어칸과 협칸에 사용된 익공의 모습이 다르다. 어칸에서는 대들보가 전면과 후면의 기둥 상부에 걸구되어 있으며, 측면에서는 고주와 평주가 뒷보로 연결되고 있다.

공포 구조에서 특이한 점은 이익공이 전면 고주열부터 길게 빠져 나와 대들보를 받치는 보아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포 위에는 대들보를 걸었는데 전면 고주열에서는 대들보 하부에 기둥을 세우고 주두를 올려 대들보를 직접 받도록 했다. 대들보 위에는 단면이 사각형인 짧은 동자주를 세우고 동자주에는 종보 보아지와 뜬 창방을 걸구하고 그 위에 크기가 작은 주두를 놓아 종보와 종도리장여를 받도록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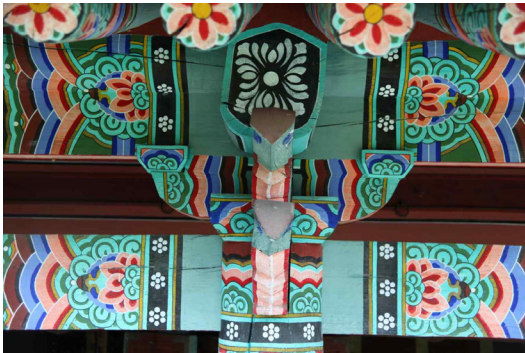
다. 밖으로 노출되는 종보 보아지는 구름문양으로 조각하였다. 도리는 3분변작법을 사용하여 배열하였다. 종보 위에는 사다리꼴 형식의 판대공을 3단으로 놓고 그 위에 종도리를 올렸다. 종도리 하부에는 장여와 뜯창방이 받치고 있으며 장여와 뜯창방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수장하였다.

대들보는 2분으로 전면과 후면 기둥 위에 걸었다. 대들보는 잘 다듬은 직선재를 사용하였으며 보머리는 직절하고 상부는 삼분두로 조각하였다. 대들보의 상부 모서리는 직선으로 모따기를 하였으며 하부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모따기를 하였다. 부재의 폭과 춤의 비는 약 2:3이다. 뒷보는 정면과 배면에 각각 2본씩 4본이 사용되었다. 보머리의 형식은 대들보와 같으며 상부와 하부 모서리는 둥글게 모따기를 했다. 종보도 보머리는 직절하고 삼분두로 처리하였다.

정묘 내부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꾸몄는데 반자판이 개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널판 하나가 여러 칸을 덮는 독특한 형식이다.



[그림 13] 정묘 종단면도(어칸)



[그림 14] 정면 공포 정면



[그림 15] 정면 공포 측면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서까래 위에 부연을 올린 겹처마 구조이다. 지붕에서는 양곡과 안허리곡이 보이지 않는다. 맞배집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곡선을 이루며 비교적 높게 제작하였다. 용마루 양쪽 끝에는 용두를 올렸으며 처마 끝에는 막새기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건물보다 높은 위계를 보여준다. 측면 지붕에는 박공널과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박공널의 연결부위에는 지내철을 달았다.

기와는 용두,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수막새, 착고, 부고가 있다. 암막새는 3종류, 수막새는 2종류가 확인되었다. 모두 근래의 기와들로서 조선시대 기와는 보이지 않는다.

IV. 조경묘 의례

조경묘의 의례는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속례(俗禮)인 경기전과 역대 시조묘(始祖廟)의 예를 그대로 따랐다. 조경묘는 고례(古禮)에 합당한 제사도 아니고 일반 사대부가에서 널리 행해지는 시조의 제사와 같았기 때문에 속례에 들어간 것이다.⁴⁾ 조경묘 제사는 중사(中祀)에 해당하였는데 제향일은 봄과 가을의 중간 달인 2월과 8월 상순에 거행하였다. 그리고 조경묘를 관리하는 구성원, 제향에 필요한 제기 수와 종류, 제관(祭官) 등에 관한 내용은 경기전의 예를 따랐다.

『춘관통고』를 보면 조경묘는 봄과 가을에 제향을 지내며, 그 의식은 속절(俗節)에 행하는 진전의 의례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관과 헌관은 전라도 내 문관과 무관 수령으로 당상관이 맡는다. 전사관(典祀官)과 대축(大祝)은 문관 수령이 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재랑(齋郎)과 축사(祝史)는 조경묘를 담당하던 관리인 별검(別檢), 참봉(參奉)이 맡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음관(蔭官) 수령이 대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조경묘의 의례는 황제국가의 의례로 전환되었다. 『대한예전』에서는 조경묘에 헌관은 1명, 전사관 겸 대축 1명, 재랑 겸 축사 1명, 찬자 겸 알

4) 이육 (2006), 「조선시대 왕실의 시조(始祖)와 조경묘(肇慶廟) 건립」, 조선시대사학보 38, 163-200쪽.

자 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1908년에는 칙령으로 제사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조경묘는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경묘의』에 수록된 대향예식(大享禮式)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조경묘 대향예식(大享禮式)

진설 (陳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자(贊者)·알자(謁者)가 먼저 들어가 사배한다. ○ 알자가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절할 자리로 들어간다. ○ 사배(四拜){○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평신} ○ 손을 씻을 곳으로 나아간다. ○ 각자 위치로 나아간다. ○ 알자가 헌관(獻官)을 인도하고 자리에 나아간다. ○ 헌관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평신} ○ 묘관(廟司)이 음식을 올린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예 [行初獻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손씻을 자리로 나아간다. ○ 【알자가 운운】 ○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술단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선다. ○ <알자가>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간다. ○ 【알자가 운운】 ○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예 [行亞獻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술단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선다. ○ <알자가>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간다. ○ 【알자가 운운】 ○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예 [行終獻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술단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선다. ○ <알자가>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간다. ○ 【알자가 운운】 ○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飲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할 자리로 나아간다. ○ 【알자가 운운】 ○ <알자의> 인도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 헌관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평신} ○ 【잡시 후】 ○ 헌관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평신}
망료(望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망료위(望燎位)로 간다. ○ 태운다. ○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나간다. ○ 전사관(典祀官)과 제집사 모두 다시 절할 자리로 간다. ○ 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평신} ○ 순서대로 나간다. ○ 찬자와 알자 모두 사배하고 나간다.

이 외에도 조경묘에서는 신위를 모시는 정묘를 수리하거나 또는 유사시 신위를 옮기거나 다시 모실 때 작헌례를 지냈으며, 매월 새로 농사지은 과일이나 곡식을 먼저 사직(社稷)이나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천신(薦新)이 있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분향례(焚香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전주부 안에 관원(官員)이 새로 부임했을 때, 사신이 파견되었을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지나갈 때 조경묘에는 숙배의(肅拜儀)를 행하였다. 또한 평상시에는 5일마다 봉심이 이루어졌다.

V. 맺음말

조경묘의 건축 특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의미가 높다.

조경묘는 1771년(영조 47)에 창건되어 25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창건하고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제사에 포함된 사당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경기전,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풍패지향’ 전주에 있는 건축물로서 조선왕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교적 묘제(廟制)의 희소성과 독창성을 지닌다.

유교국가에서 예제(禮制)는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였다. 예제건축은 함부로 건축할 수 없으며 일정한 제도에 따라 건축되었다. 왕조국가에서 시조(始祖)란 나라를 연 창업주를 지칭하며 시조묘에는 그 나라의 초대 왕을 모신다. 그러나 조경묘는 조선의 태조가 아닌 전주이씨의 시조(始祖)와 시조비(始祖妃)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시조묘와는 다르다. 조경묘와 같은 사례는 중국의 진·한 이후의 왕조들과 우리나라의 고려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조경묘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독자적인 묘제(廟制)라고도 볼 수 있다.

3)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는 보학이 발달하면서 조상이 덕(德)이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세덕(世德) 사상이 유행하였다. 세덕의 길고 짧음이 결국 신분상의 지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 문중들은 시조에 대한 기원을 찾고, 조상의 공덕을 내세우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다. 조경묘는 왕실의 연원을 신라까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4) 중심영역이 창건이후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완전성이 높다.

1771년에 창건된 조경묘는 정묘를 비롯하여 동·서익랑, 내신문, 외신문 등 중심영역의 건축물들이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부속채 영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부 건물이 신축되거나 철거되면서 변화되었다. 그러나 조경묘에 대한 관련 문헌과 옛 지도, 도형 등이 잘 남아 있어 원형을 충분히 고증할 수 있다. 특히, 본래 터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시대 조경묘의 완전한 모습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조선시대 예제 건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높다.

조경묘는 조선시대 예제건축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면서 제례를 지내는 공간을 위요하여 엄숙한 공간을 만들

어 내고 있다. 화려한 치장 대신 절제와 간소함이 강조되는 예제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예제적 특징은 건물의 배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6) 수준 높은 건축수법을 지니고 있으며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조경묘 정묘는 높은 기단, 월대 조성, 지붕부 양성바름 등을 통해 높은 품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비례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당당한 느낌을 준다. 부재는 모두 다듬은 것을 사용하였는데 조선 후기 건물에서 모두 가공한 부재를 사용한 사례는 궁궐 건축물을 빼고 찾아보기 어렵다. 내부에 있는 감실은 한양에 살던 최고의 기술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처럼 조경묘는 공력이 많이 들어간 건축물로서 당시 수준 높은 건축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사용된 부재가 건실하고, 치목수법 등도 우수하며 조선 후기의 건축 구조와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창건 이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7) 유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교적 의례가 전승되어 무형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조경묘는 국가 제사가 행해진 곳으로서 조선시대 예제건축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제례를 행하는 주체가 변화되고, 의례의 내용도 변화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제례가 지속되어 제례시설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의례의 내용과 방식은 『조경묘의』 등 관련 기록들이 잘 남아 있어 의례의 원형 고증이 가능하다. 즉, 조경묘는 높은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지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8) 문헌과 실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조경묘는 창건의 전말, 수리 기록, 의례와 건축 등을 자세히 기록한 『조경묘지 및 소배의물구별성책』, 『조경묘의』, 『조경묘경기전수리등록』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조경묘를 자세히 그린 고지도와 도형, 일제강점기에 관리한 기록물도 잘 남아 있다. 따라서 조경묘는 문헌과 실재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조경묘는 풍패지향 전주를 상징하는 의미가 크며, 조선시대 왕실에서 주도하여 지방에 세운 예제건축으로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조경묘는 경기전 사적 범위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경묘는 경기전과 성격이 다른 유적이므로 별도의 국가 사적 지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경묘 정묘는 조선 후기 사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준 높은 건축수법을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구조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경단(肇慶壇) 조성과 그 역사성

이 옥*

< 목 차 >

- I. 서론
- II. 조선시대 건지산과 시조묘
- III. 대한제국기 조경단 건립
- IV. 결론

I. 서론

조선이 건국된 후 전주, 영흥, 함흥 등지는 왕실의 풍패지향으로 간주되어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며 나라의 관심을 받았다. 전주 경기전, 함흥과 영흥의 본궁은 이러한 풍패지향의 표식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전주와 이북의 함경도 지역은 풍패지향의 성격이나 유적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함흥과 영흥은 익조로부터 태종까지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었으므로 조선의 건국자의 실제적 고향이었다. 그리고 조선 개국 후 태조는 고조까지를 왕으로 추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능이나 유적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 잘 보존되었다. 이후 태조의 탄강지인 영흥의 흑석리와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함흥의 귀주동에는 선원전과 경흥전이 세워지고 그 외에 함흥과 영흥에 본궁이 건립되어 조선초기부터 왕실과 관계를 맺었다.

반면 전주에는 태조 사후 태조의 진전인 경기전(慶基殿)이 세워짐으로써 왕실의 발상지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후 조선후기 영조대에 이르러 전주부의 도성 문을 풍남문(豐南門), 패서문(沛西門)이라 하고 1771년(영조 47)에 시조 사공공의 사당인 조경묘(肇慶廟)를 경기전 뒤편에 세움으로써 풍패지향(豐沛之鄉)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殿)과 묘(廟)는 모셔진 인물의 유적이 전주에 남아있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향공간이 아니었다. 왕실의 관향(貫鄉)이란 관념 때문에 태조의 진전을 전주에 모셨고, 시조묘 역시 그에 관한 유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조제(始祖祭)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립된 것이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황실에서는 목조가 함흥에 정착하지 이전의 역사 곧, 전주에서 삼척까지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내고 이를 보존하고 의례적 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899년(광무 3) 5월 10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조경단(肇慶壇)이 건립된다. 이 조경단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시조이자 왕실의 시조인 사공공(司空公) 이한(李翰)의 묘역(墓域)을 기념하고 그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건립된 제단이었다.

본고는 조경단의 구성과 그 역사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선시대 전주 건지산과 시조 묘역에 관한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왕실 시조에 대한 논의는 대한제국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전주의 주산인 건지산과 연관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제국기 조경단 건립 과정을 발의에서 단의 구성까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전주 봉심재신이었던 이재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전과 달라진 관점들을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경단이 지니는 의미를 과거와 당대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¹⁾

II. 조선시대 건지산과 시조묘

1) 건지산의 주산 논쟁

조선시대 전주의 주산(主山)이었다. 조선 전기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서 건지산을 전주의 주산으로 언급한 후 전주 관련 읍지마다 동일하게 건지산을 주산으로 기록하였다. 『완산지』나 『경기전역』에서도 건지산은 주산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읍지의 기록과 무관하게 건지산에 부여된 주산의 지위가 불완전하였다. 이는 건지산이 전주부에서 10리 정도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도 106m의 나지막한 산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건지산이 조정에게 알려지게 된 까닭은 이 건지산의 주산 논쟁 때문이었다.

1705년(숙종 44)에 건지산을 사이에 두고 진흥청과 전라도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진흥청에서는 연이은 기근과 재해로 저치미(儲置米)가 바닥이 나자 전주 건지산을 본청에 소속시켜 세금을 거둬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전라도에서는 건지산이 전주의 진산이고 주맥이라며 즉각 진흥청의 의견에 반대하였고, 이런 반론을 접한 당시 예조판서이자 진흥당상(賑廳堂上)이었던 민진원(閔鎭遠)은 건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건지산은 이전부터 풍패(豐沛)의 주맥(主脈)이라 칭하였지만 그 실상 진전의 주맥은 동쪽으로부터 오며 건지산은 북방을 차단하는 한 가지의 잔산(殘山)입니다. 진전(眞

1) 본 원고는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이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에 실린 「전주 건지산과 조경단 건립」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殿)과 관사(官舍)는 모두 남향이고 건지산이 배후에 있으므로 넓게 보아 이를 주맥이라 칭하였지만 이 말은 실상이 아닙니다. 설령 진실로 주맥이라 할지라도 도성으로 말하면 백악과 삼각산의 산등선 사이 평지에는 원래 경작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진전이 비록 중요한 것이지만 종묘와 사직이 있는 도성에 비하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²⁾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민진원은 건지산이 풍패의 주맥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그는 전주의 주산이 건지산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전주로 들어오는 산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경기전과 관사(官舍)가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산(殘山)’인 건지산을 주맥이라 대략 칭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여기서 동쪽 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전주읍성 동쪽 기린봉 자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진원의 주장을 통해서 전주의 지형상 건지산에 부여된 주산의 상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지산은 전주부나 진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야룡산평(野龍山坪)이란 너른 평야가 있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기린봉이나 승암산이 각각 306m, 271m이지만 건지산은 106m의 높이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다.³⁾ 한 고을의 진산은 산의 높이, 형세, 거리, 방위, 역사적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건지산을 주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는 남향이란 방위 외에 보이지 않을 만큼 취약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형적 취약성을 조선후기 편찬된 읍지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후기에 편찬된 읍지들에서도 전주의 주산은 건지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후기 편찬된 읍지에서는 전주의 주산과 경기전의 주맥을 분리하여 전자는 건지산으로, 후자는 발리산으로 기재하고 있다. 영조대 편찬된 읍지를 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부읍지(全州府邑誌)』, 정조대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완산지』, 1791년(정조 15) 경에 작성된 『전라전주익산여산영암읍지(全羅道全州益山礪山靈巖邑誌)』 등에는 전주의 진산을 건지산으로 간주하면서도 한결같이 발리산을 진전의 주맥으로 기록하였다. 관아와 경기전은 같은 성내에 있지만 전자는 북쪽에 있으며 경기전은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발리산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런 위치상 차이로 인하여 건지산에서 경기전을 분리하여 발리산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형상의 결점이나 조선후기 읍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지산이 조선시대 계속 전주의 주산으로 간주되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전기는 물론 1705년(숙종 44) 진흥청과 전라도의 논쟁에서 민진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라 감사의 승리로 끝났다. 즉, 건지산은 전주의 진산이자 진전의 주맥이란 의미를 그대도 부여받아 금역으로 유지되었다.⁴⁾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자료가 이제

2) 『承政院日記』 肅宗 44年(1718) 潤8月 23日.

3) 승암산과 기린봉은 이어져 있어 봉우리는 둘이지만 산체는 하나이다(최창조, 앞의 책, 165쪽).

4) 당시 건지산 주산 논쟁과 절수의 논쟁은 중재에 나선 李健命의 주장이 수용되었다. 그는 전주에 건지산이 풍패의 주맥으로 북방을 가리고 있고, 진전이 있는 대도회이므로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건지산 평지는 진흥청에 두지 않더라도 본고을에서 백성들이 함부로 경작하는 폐해가 있으므로 호조에 붙여 높은 세금을 부가할 것을 청하였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경작을 기피하면 해로

곤이 전주를 답사하면서 얻어 등사하여 중앙에 보고한 『전주부건지산금양절목등초』이다.⁵⁾

이 자료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건지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최종적인 법규로서, 1782년(정조6) 8월에 홍충도 연산에 살던 유학 이진방이 격쟁(擊錚)하며 건지산의 수호를 호소한 데에서 비롯하였다. 그는 당시 건지산에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투장하며 가마 굽는 곳까지 만들어 심하게 훼손하였으니 이를 물리치고 산을 보호할 것을 청하였다. 이러한 이진방의 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정조는 관찰사로 하여금 봉심하여 사실의 전말을 조사하여 올릴 것을 명한다. 그리고 법령을 제정하여 투장과 경작을 엄격히 금하고 봄, 가을로 방백이 보고하고 예조에서는 3년을 간격으로 낭관을 파견하여 비리를 적발하는 등을 정식으로 삼고, 법을 어겨 투장한 민간인 무덤은 오래된 것이 아니면 일일이 파내도록 하였다. 이때의 사정과 수호절목을 책으로 만들어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82년(정조 6) 당시 정조의 명의 받아 건지산을 답사한 보고자는 건지산에 대해서 “주(州)의 주맥이 되고 진전(眞殿)을 배봉(陪奉)하는 후면이 되어 비보로 이름하였으니, 관계되는 바가 막중하고 수호하는 것이 특별합니다”라고 하였다. ⁶⁾ 그리고 당시 만들어진 공식적인 건지산의 금양 절목에서도 분명히 이를 밝히고 있다.

6. 본산은 진전의 주맥으로 ‘금경(禁耕)’ 2자가 양안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궁방절수(宮房折受)도 모두 환침(還寢)하였는즉 간민(奸民)이 법을 어기고 몰래 간척한 것은 심히 슬픈 일이다. 지금 봉직에게 지급하는 60두락 외에 일체의 것은 환진(還陳)하며, 만약 이전같이 법을 어기고 경작하는 폐단이 있으면 어긴자에게 ‘봉산봉표내설장률’에 의하여 장(杖)100 대, 유(流) 3000리로 논죄하고 감관과 봉직 등은 지정동률(知情同律)을 적용한다.⁷⁾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금양조치는 건지산이 진전의 주맥임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라 금양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위 글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건지산을 부의 진산 또는 진전의 주맥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건지산을 금양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시조묘의 묘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조대에 건지산과 시조묘역에 관한 논의가 중앙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건지산의 봉호가 전주의 주산과 경기전의 주맥이란 명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더욱더 확인시켜준다.

운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肅宗實錄』, 44년 9월 15일).

5) 『全州府乾止山禁養節目臚抄』에 기록된 「全州府所在 乾止山禁養節目臚抄」을 가리킨다.

6) 『全州府乾止山禁養節目臚抄』, 「全州府所在 乾止山禁養節目臚抄」 「狀啓」, 乾隆 47年 8月 14日.

7) 앞의 책, 「全州府所在 乾止山禁養節目臚抄」, 乾隆47年 9月 19日, 「禁條節目移文」, “本山以鎮殿主脈 禁耕二字 昭在量案 兪除良 宮房折受 輒皆還寢 則奸民之冒法潛墾 極爲痛惡 今此六拾斗落 只許給峰直者外 一并還陳爲白乎矣 若或有如前犯耕之弊 則當該犯者 依封山封標內設庄律 論杖一百流三千里 監官峰直等 以知情同律爲白齊”

2) 건지산과 왕실 시조묘

건지산은 조선시대 여러 차례 조정의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 대부분은 궁방(宮房)이나 관청에서 절수하여 세수(稅收)를 얻으려는 것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주산 논쟁이란 건지산을 경작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였다. 특히 왕실 궁방에서 건지산을 훼손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조짐이나 침탈이 있을 때면 전라도 감찰사나 지역 사람들이 건지산을 고을의 주산이라며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시조묘(始祖墓)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기준으로 할 때 건지산이 왕실의 시조 묘와 연관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729년(영조5)이었다. 당시에 영조는 건지산을 새로 태어난 옹주방(翁主房)에 절수시키려 했으나 관찰사 이광덕(李匡德, 1690~1748)의 반대로 중단되었다.⁸⁾ 이 논의 과정에서 건지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면을 보여주는 언급이 있었다. 당시 건지산 훼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이광덕은 주산과 비보소로 보호되어 온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이 불가하다며 반대하였고, 금양을 해제하더라도 사방(私房)에 절수시킬 것이 아니라 경기전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지경연사(知經筵事) 윤순(尹淳, 1680~1741)은 건지산 묘역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며 이전처럼 둘 것을 건의하였다.⁹⁾ 그는 지금까지 조정에서 건지산을 절수하지 않은 것은 오래된 무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예부터 이 무덤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사방에 봉표가 완연하지만 고증할 문적이 없어 관찰사가 보고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윤순이 말한 무덤이 시조묘를 가리키는지와 전해지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후의 주장과 연결시켜 볼 때 당시 이 무덤이 전주이씨의 시조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확증이 없어 관찰사가 중앙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 지역 내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왔을 뿐 중앙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윤순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조는 건지산을 호조에 귀속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이전대로 두었다.

이후 1744년(영조 20)에 영조가 추존왕 이전 무덤에 대해 혹 아는 자가 있는지 신하들에게 문의했을 때 유엄과 송인명이 건지산에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전하였다.¹⁰⁾ 이때에도 시조묘라고 지칭하지 않고 있지만 윤순, 유엄, 송인명의 언급에서 건지산을 풍패지향의 주산이나 진전의 주맥이 아니라 시조묘와 연관시켜 이해하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765년(영조 41) 4월, 시조 묘역의 보호와 기념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학림군 이육(李燾)이었다. 이육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건지산의 시조 묘역 문제를 공론화하여 처음으로 제향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영조는 이육의 주장에 대해 “세간에 전하는 말이 비록 상세하더라도 민

8) 『英祖實錄』 卷22 英祖 5年 4月 2日(丙子) ; 『英祖實錄』 卷23, 英祖 5年 尹7月 23(乙未).

9) 『承政院日記』 第 690冊, 英祖 5年 潤7月 23日(乙未).

10) 『承政院日記』 第 967冊, 英祖 20年 1月 4日(壬午).

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은·주의 예를 빗자하여 비석을 세울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¹¹⁾

그 후 1771년(영조 47) 10월 이득리(李得履) 등이 시조의 사당을 건립할 것을 요청하여 건지산이 아닌 읍성 내 경기전 뒤편에 조경묘가 세워졌다.¹²⁾ 조경묘의 건립은 이종건이 주장한 시조 묘역 조성과의 구별될 뿐 아니라 건지산과 시조묘의 관계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경묘 건립은 건지산에 시조묘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덤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시조에 대한 제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득리 등은 시조제가 천자로부터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예임을 강조하여 왕실의 시조제사를 주장하였고, 영조는 사대부들의 시조와 원조 공경을 들어 왕실 시조의 사당을 짓고 제사를 거행하였다.

조경묘 건립이 확정된 후에도 이육은 건지산을 봉호하여 능원의 경계를 조성하고 그 가운데 사당을 건립하여 마치 능원의 정자각처럼 만들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³⁾ 이후 건지산 시조묘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함없이 부정적이었는데 그 예를 『선원계보기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79년(숙종 5)에 처음 편찬된 『선원계보기략』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며 계속 만들어졌는데 1783년(정조 7)에 전반적인 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이때 범례에 새로 추가된 항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계(璿系) 제 1세대인 선공(先公)의 묘지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2세부터 16세가 지는 선비(先妣)와 묘지에 관해서 쓰지 않았다. 이것은 신라와 고려 때 문헌이 부족하여 조기(肇基)의 사실을 영구히 징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영조대 말년까지 시조묘 봉축에 대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선원계보기략』의 범례에 실린 위 기사는 매우 의미있는 선언이다. 적어도 왕실 또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건지산 묘역에 전래되어오는 시조묘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세전(世傳)의 기록

조선시대 건지산에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주의 주산이었고 왕실 시조묘의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과 무관하게 건지산 시조묘역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널리 유포되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조선 후기 편찬된 『읍지』였다.

11) 『承政院日記』英祖 41年(1765) 4月 14日.

12) 본고 5장 1절 참조.

13) 『承政院日記』英祖 47年(1771) 10月 15日.

14) 『璿源系譜紀略』(藏K2-995, 1795년 정조19), 凡例, “先系第一世先公不書墓地 二世至十六世不書妣位及墓地者 以羅麗之際文獻不足肇基事實 無以徵於久遠也”

【1】언전(諺傳)에 건지산 사공공의 묘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 영종이 땅을 파서 묘역을 검증할 것을 명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결국 근처 백성들의 무덤을 발굴하여 제거하고 감관과 산직을 두어 금표의 경계를 정하고 경작을 금하였으며 방백과 수령으로 하여금 삼가 지키고 보호하여 숭봉의 예를 보존하도록 하였다.¹⁵⁾

【2】건지산 북쪽 십리 거리에 있다. 세전(世傳)에 국조의 선계(先系) 묘가 있다고 하여 영종 6년에 감사로 하여금 민간 무덤을 옮기도록 하고 10리를 한정하여 봉표로 삼고 경작과 벌목을 금하였다.¹⁶⁾

인용문 【1】은 『완산지』 「총묘(塚墓)」 항목에 있는 내용이다. 이 책에서는 ‘언전(諺傳)’이란 단서를 달면서 건지산에 사공공의 묘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영조가 건지산을 실제 답사, 발굴하여 증거를 찾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만 봉호하고 관리를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인용문 【2】는 김정호가 말년에 지은 『대동지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역시 ‘세전(世傳)’이란 단서를 달면서 건지산 시조묘역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1730년(영조 6)에 시조묘 때문에 건지산을 봉호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 영조대 건지산에 대한 발굴작업과 봉호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대동지지』에서 언급한 1730년(영조 6)에는 시조묘에 관한 언급이 조정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이 비슷한 시기인 1729년(영조 5)에 건지산을 두고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영조가 건지산 토지를 새로 태어난 옹주방(翁主房)에 절수(折收)하려다 관찰사 이광덕(李匡德)의 반대로 중단된 일이다.¹⁷⁾ 이 사건으로 이광덕은 추고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때 그가 건지산 보호를 요청하면서 끝까지 내걸었던 명분은 건지산이 경기전의 주맥이라는 논리였다. 영조 역시 건지산이 경기전의 주맥인 것을 모르고 거행한 일이라며 변명하였다. 이들의 논의에서 시조묘에 관한 것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시기상으로 볼 때 『대동지지』에 언급한 영조 6년 봉호는 이 사건을 두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 읍지에서 언급한 건지산 시조묘에 관한 내용은 세전 또는 언전이나 확인되지 않은 영조대 사건을 기재한 것이었다.

조선후기 읍지들을 기준으로 할 때 전주 건지산은 주산의 상징성을 유지하였지만 읍성 내 진전의 주맥은 읍성에 가까이 있는 발리산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건지산에는 시조묘역이란 인식이 새로 입혀지고 있었다.

15) 『完山誌』, 塚墓 “乾止山 諺傳 司空公墓在此 英宗 命掘土驗其瑩域 而無所得 遂掘去傍近民塚 置監官山直 定標禁養 方伯守臣恪謹守護 以存崇奉之禮焉”

16) 『大東地志』(奎古 4790-37-1-15), 全州, 山水, “乾止山北十里○世傳 國朝先系墳墓所在云故 英宗六年令監司盡移民塚限十里”

17) 『英祖實錄』5年(1729) 4月 2日 ; 『英祖實錄』5年 潤7月 23日.

Ⅲ. 대한제국기 조경단 건립

1) 조경단 건립의 발의

조경단 건립은 1898년 9월 12일(음력)에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이종건(李鍾健 ; 1843-1930) 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옛날 주공(周公)은 예법(禮法)을 제정하여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후직(后稷)을 함께 제사지내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덕에 보답하는 뜻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시조 사공공(司空公)은 곧 주(周)나라의 후직과 같은 것인 만큼 숭배하여 받드는 절차는 마땅히 옛날과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은 특별히 수호군(守護軍)을 전주(全州) 건지산(乾止山)의 무덤이 있는 곳에 두고서 나무를 베고 짐승을 기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숭배하여 받드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년 이래로 나라의 기틀이 해이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나무를 찍고 몰래 무덤을 쓰는 버릇이 흔히 있곤 합니다. 심지어 온 산이 별거숭이로 되고 무덤이 다닥다닥 많이 널려 있건만 금지시키지 못하여 마침내 더없이 중요한 무덤이 있는 구역 안에 땅을 나누어 농사를 짓게 하고 사적으로 가축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길가는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탄식을 하는데 하물며 후예들이 어찌 원통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¹⁸⁾

이종건은 먼저 조선 왕실의 시조 이한을 주(周)나라의 시조 후직에 비유하고 이 때문에 조선조 태조 때부터 그의 무덤이 있던 건지산에 수호군을 두어서 보호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당시 그러한 금령이 해이해지면서 백성들이 투쟁하고 벌목과 경작을 일삼아 별거숭이가 되었다고 한탄하였다.

이 상소를 받은 고종은 “먼 조상을 추모하고 장구하게 잘 모시려는 정성은 필부의 서민들에게도 있는데 황제의 가(家)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선조 묘역을 수호할 방도를 종정원(宗正院)에서 의논하여 궁내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종건이 제기한 건지산 시조 묘역 관리 문제는 종정원의 논의를 거치면서 제단의 건립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종정원에서는 이전에 건지산을 봉산(封山)한 후에도 묘호(墓號)가 없었던 것은 열성조께서 신중을 기한 것이지만 조경묘(肇慶廟)가 이미 건립되어 상황에서 그의 묘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능이나 원이라 부르는 것은 더욱 신중히 해야 할 사안이므로 다만 ‘건지단(乾止壇)’이란 이름의 제단과 비석을 세워 묘역을 영원히 보존할 것을 청하였다.¹⁹⁾

고종은 이러한 종정원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건지산에 제단과 비석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다만 제단의 이름을 애초 건지단에서 조경단(肇慶壇)으로 수정하여 황실의 발상지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²⁰⁾ 이를 위해서 3월 10일(양)에

18) 『高宗實錄』 35年(1898) 10月 24日.

19) 『高宗實錄』 36年(1899) 1월 25일.

조경단영건청(肇慶壇營建廳)이 별도로 신설되고 장례원경 이호익, 장례원 소경 심상황,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 등이 영건청 당상으로 임명되었다.²¹⁾ 그리고 4월 22일(양)에 전주봉심재신(全州奉審宰臣) 이재곤(李載崐)이 전주로 출발함으로써 조경단 건립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문헌 조사 : 세전의 역사화

1899년 5월 1일(양)에 전주봉심관으로 전주에 도착한 이재곤은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과 함께 건지산에 직접 답사하여 제단을 세울 곳과 주변 봉표(封標)의 한계를 정하였다. 그리고 건지산 관련 문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전해오는 목조와 태조 관련 구전들을 수집하였다. 이런 여러 활동 중에서 먼저 주목할 사항은 건지산에 대한 그의 이해이다. 현지답사와 문헌자료를 검토한 이재곤은 건지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옛 책의 공첩에는 건지산이 풍패(豐沛) 고을의 주산이고 조경묘·경기전의 주맥이라고 여러번 언급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전의(殿儀)』을 살펴보고 읍지(邑誌)를 보더라도 모두 건지산에는 국조(國祖) 사공공의 묘가 있으나 다만 묘의 향방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흠이라 의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열성조께서 건지산을 둘러 봉호(封護)한 뜻은 이것 때문이지 전주의 진산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산천의 형세를 살펴보면대 마이산의 서쪽에서 백리를 달려와 가장 수려하고 기이한 것이 기린봉이 되었고 비스듬히 돌아 북으로 뻗은 것이 건지산이니 또 하나의 맥입니다. 기린봉의 바깥으로 뻗은 산맥 하나가 승가산(僧巖山)이 되고 서쪽 아래로 발리봉(發李峰)이 되고 오목대가 되었습니다. 전주부의 치소(治所)는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발리산은 우리 목조가 살았던 터이므로 풍패의 주산이 되고 묘전의 내맥(來脈)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²²⁾

위 인용문에서 이재곤은 그 동안 건지산이 전주의 주산이자 경기전 및 조경묘의 주맥으로 간주되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전의(殿儀)』²³⁾나 『읍지(邑誌)』²⁴⁾에서 모두 사공공의 묘가 건지산에

20) 위의 책, 같은 날.

21) 『肇慶壇營建廳儀軌』上, 詔勅, 己亥 正月 29日.

22) 『全州府乾止山禁養節目臚抄』(奎9740), 光武三年陰曆己亥三月 日, “舊券中公牒屢有 稱乾止山乃豐沛主鎮廟殿來脈云爾者 大是失真 謹按殿儀 若邑誌俱載乾止山有國祖司空公墓 獨欠負向之無徵 未免九疑之指點 則仰惟列聖朝 環山封護之意 實在此 而不在彼也 且以山川形勝考之 馬耳山西行百里 最秀而奇者 爲麒麟峰 迤轉而北爲乾止山 自是一脈也 麟峰外一脈爲僧巖山 山下爲發李峰 爲梧木臺 而府治開焉 發李山即我穆王舊潛之墟 則是眞爲豐沛主鎮 廟殿來脈也 無疑”

23) 『殿儀』는 『慶基殿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전의』의 원본은 현재 찾을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李王職에서 베껴쓴 사본이 장서각에 있다(장 K2-2408). 『全州府乾止山禁養節目臚抄』(奎9740)에서 이재곤이 『전의』라는 이름으로 인용한 내용이 『경기전의』에 그대로 실려있다.

24) 『읍지』는 『完山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全州府乾止山禁養節目臚抄』(奎9740)에서 이재곤이 『읍지』라는 이름으로 인용한 내용이 『완산지』(奎12272)의 내용과 동일하다.

있었다고 기록한 사실이다.²⁵⁾ 이재곤은 이 기록을 토대로 건지산이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은 까닭은 주산이 아니라 시조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이종건의 상소문에서도 보인다. 이종건은 “우리 태조대왕은 특별히 수호군을 전주 건지산의 무덤이 있는 곳에 두고서 나무를 베고 짐승을 기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며 건지산의 보호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초기부터 건지산에 시조묘역이 알려져서 국가의 봉호를 받아왔다는 주장과 동일하였다.

둘째는 산천의 형세를 통해 볼 때 전주의 주산은 건지산이 아니라 마이산, 기린봉, 승암산을 이어오는 발리산(發李山)이라는 주장이다. 발리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신증(新增)’조에 발산(鉢山)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전주부의 동쪽으로 3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기린봉에서 전주 읍성 쪽으로 내려오는 산이다. 이재곤은 이 발리산이 읍성과 인접했을 뿐 아니라 읍성 내 동남쪽에 있었던 경기전 및 조경묘과 연결되었으므로 전주의 주맥이자 묘전(廟殿)의 내맥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이재곤은 그 동안 건지산에 부여된 주산의 상징성을 발리산으로 옮기는 반면 조선 초기부터 건지산에 주어진 봉호의 명분을 시조묘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건지산은 오래 전부터 시조묘역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3) 묘역 조성 : 시조묘역의 신화화

이재곤이 답사한 건지산은 동쪽으로 도솔봉에서 그 맥이 들어오다 골짜기를 이루고 왕자봉이라 일컫는 곳에서 왕자맥(王字脈)을 이루며 두드러졌다가 다시 언덕을 형성하였는데 바로 이곳에 전주이씨의 시조 묘역이 있었던 곳이라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봉분의 흔적이 사라진 삼국시대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건지산 전체를 묘역으로 정할 순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어느 한 곳을 정하기에도 미안하였다. 당시 건지산의 상황을 봉심재신 이재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3월 22일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과 함께 건지산에 이르러 단을 세울 곳을 봉심한즉 건지산은 전주부의 북쪽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狹窄한 산봉우리들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기풍(氣風)이 조밀하여 용이 서리고 봉황이 춤추는 형상이니 하늘이 보장한 길지(吉地)이옵니다. 왕자봉(王字峰) 아래 부신(負辰)의 언덕이 있는 곳에 묘를 삼은 곳으로 의심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산지기와 거민에게 자세히 물어본즉 모두 이곳 묘의 형상을 예부터 하묘(下墓)라 일컫고, 하묘로부터 위로 16척 5촌 쯤 떨어진 곳에 상묘(上墓)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왕래하며 여러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묘의 형상과 비슷한 곳을 찾진 못하여 줄로 주변을 둘러 송나무에 걸어 묘역을 표시하였습니다.²⁶⁾

25) 앞의책, 「可據文獻」, “殿儀 府南三里有坤止山 北十里有乾止山卽 司空公墓所也 水口有德津大堤 堤西駕連山(墓儀 今如平地 道臣春秋奉審) 邑誌 乾止山 諺傳 司空公墓在此 英宗命掘土驗其塋域 而無所得 遂掘去傍近民塚 叱監官山直定標禁養 方伯守臣 恪勤守護以尊崇奉之禮焉”

26)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上, 詔勅, 己亥4月 6日 全州奉審 宰臣 李載崐書, “本月 二十二日 與全羅北道 觀察使 李完用 進詣乾止山 設壇處 奉審是白乎則 乾止山在府北十里許 峰巒秀美風氣固密

건지산 왕자봉 아래에 이전부터 상묘(上墓)와 하묘(下墓)라 일컬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이재곤은 이 두 곳을 여러 날 답사하였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하자 이 주변을 줄로 둘러 묘역을 표시하였다. 이후 이곳을 묘역 의사처(疑似處)로 삼고 이곳에서 서쪽 방향[西方]으로 72척 쯤 떨어진 곳에 단을 세우고, 이 단에서 남쪽 방향[牛方]으로 27척 떨어진 곳에 비석을 세우고, 북쪽 산등성 밖 409척 떨어진 곳에 재실(齋室)을 짓도록 하였다.²⁷⁾

당시 건지산에 시조의 묘역이 있었다는 물증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곳이 시조묘역이란 확신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풍수적 안목이며 또 하나는 석물(石物)의 출현이다. 이 두 가지는 시조묘역의 역사화가 가지는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 인용문에서 건지산을 “하늘이 보장한 길지”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풍수적 견해는 수사적인 표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후 이곳을 봉심하고 고종에게 보고하였던 궁내부 대신 이재순(李載純) 역시 건지산을 국의 형세가 맑고 아름다우며 다른 어떤 곳보다 좋은 곳이라 칭송하였다.²⁸⁾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고종은 “건지산이 비록 산이 나지막하고 산기슭이 길지 않지만 국의 형세가 맑고 고와 서울 가까이에 있는 능침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태조대왕의 탄강이 실로 이 산에서 기반한 것”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²⁹⁾

건지산의 풍수적 국면과 시조묘는 실제 아무런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다. 사공공의 묘가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 음택풍수사상이 널리 유포된 것도 아니며 그에 맞추어서 묘자리를 정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개창이란 결과를 가지고 그 기틀이 된 것으로 믿어지는 풍수적 길지를 찾아 시조묘와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그 산의 국면이 왕업을 일으킬 만한 형상이라는 데에서 시조묘의 확신성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종은 제단의 건축에서 더 나아가 묘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봉분을 수축할 것을 명하였다.³⁰⁾

여기서 건지산 시조묘역의 역사성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됨을 볼 수 있다. 시조 묘역이 그 자체로 의미있는 공간이 아니라 풍수설에 의하여 신화적 의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서 시조묘는 현재 황실 및 황제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아우라가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조묘역의 역사화’가 풍수설에 의하여 역으로 ‘시조묘역의 신화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신화화는 초월적 존재의 네러티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매개로 초월적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 산자와 죽은자의 연속성 등을 포함한 풍수적 담론의 수용을 가리킨다. 만약 시조묘역의 역사화가 이러한 신화화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시조의 연원을 밝히고 황제의 권위를 표상하는 제장의 공간에 머물

龍蟠鳳舞儘 是天藏吉地是白乎跡 王字峰下負辰之原 有疑似封墓之形 故臣細詢於山直及居民則 皆以爲此墓形 自古稱下墓 由下墓上十六尺五寸 又有上墓云 而臣往來屢日周回審視 未覩疑似之形是白遣 以藁索圍着松樹表護塋域”

27) 위의 책, 乙亥 4月 8日 全州 奉審 宰臣 李載崑書.

28) 『承政院日記』 高宗 36年(1899)4月 18日(陽 5月 27日).

29) 『日省錄』 高宗 36年(1899) 4月 19日(陽 5月 28日).

30) 위의 책, 같은 날.

렸을 것이다. 풍수적 해석을 통해서 건지산 시조묘역은 황실의 정치적 실체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영구한 미래를 보장하는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풍수적 길지에 대한 확실성으로 인해 조경단 건립 사업은 제단 앞에 봉분을 조성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애초 조경단 건립은 묘의 정확한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의심되는 장소를 폭넓게 정하고 제단을 건립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봉분의 조성을 위해서 시조묘 위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봉분을 쌓을 자리를 찾고 있던 6월 15일(음 5월 8일)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의사처를 증험할 수 있는 것이 불명확하여 마음 가득 신중하였는데 음력 5월 8일 역소(役所)의 감독 위원인 이우관(李愚寬)이 묘역의 왼쪽에서 오래된 나무 뿌리를 뽑던 중 모나고 이상한 돌 한 괴(塊)를 얻었습니다. 먼지를 떨어내고 보니 돌의 상면과 왼쪽 면에 51개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의 문세(文勢)가 기괴하고 고르지 못하였으며 부참(符讖)에 속한 것 같았습니다. 이에 신이 여러 당상 및 재량들과 함께 돌이 나온 곳을 자세히 살펴보고, 석괴 문자를 여러 방향으로 해석해보았으나 종래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신이(神異)한 상황으로 흐르니 길조(吉兆)를 알리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옵니까! 돌이 나온 곳으로부터 위로 9척된 곳이 바로 의사처의 혈처이고, 방외(方外) 상지관(相地官) 최치두(崔致斗)가 지적한 곳이 돌이 나온 곳 조금 위쪽이며 산직(山直)이 가리킨 곳은 그 조금 아래 오른편에 있으니 모두 3,4척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흙을 돋우는 것은 마땅히 이 가운데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분을 기다립니다.³¹⁾

인용문에서와 같이 조경단 조성 사업을 맡은 이재곤 역시 사공공의 묘소를 정확히 찾지 못하여 마음 속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던 중 6월 15일에 역소(役所) 감독위원이었던 이우관이 묘역의 왼편에 오래 묵은 나무 뿌리를 뽑아내는 중 이상한 방석(方石) 하나를 발견한다. 이 돌에는 윗면과 왼쪽 모퉁이에 전각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51자가 되었다. 비결문 같이 난해한 이 글자들을 끝내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이재곤은 이 기이한 돌의 출현을 신이(神異)하게 여기고 길조(吉兆)의 증거라고 하였다. 결국 이 돌의 출현은 묘역을 찾지 못한 그에게 확신을 제공하였다. 돌이 발견되기 전에 보았던 의사처의 혈처나 풍수가의 안목과 산직의 말들이 있었지만 확신을 못했고 있던 이재곤은 이 돌이 발견됨으로써 조경묘의 묘역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일반 사대부가에서 시조나 원조의 묘역을 찾을 때 묘 앞의 비석이나 묘지 주변에 묻어두는 지석(誌石)이 중요한 증거였다. 묘의 주인을 찾기 위해 묘 주변을 발굴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지석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건지산에서 발견된

31)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上, 詔勅, 乙亥 5月初9日, 全州 奉審 宰臣 李載崑書, “疑似處證驗不明 滿心慎重是白加尼 陰曆五月初八日 役所 監董委員 李愚寬 拔去年久木根於 瑩域之左是白如加 屈得方石一塊異常者 細加拂拭則 上面及左方有刻文五十一字 而文勢奇怪不倫 有似讖符之屬是如 顯納故臣與諸堂郎齊進掘石處 詳細審玩 仍以石刻文字多方解說 終未曉得是白乎矣 事涉神異 足爲吉兆之明驗是白如乎 自掘石處上距九尺正是疑似之穴是白遣 方外相地官崔致斗所指處在其稍上 山直所指處在其稍下右邊 俱不過三四尺之頃視百乎所 今此加土當中處 伏俟處分舉行”

방석은 이러한 지식의 하나로 여겨지지만 난해한 글귀는 의문만 더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독불능의 난해성이 ‘신이’한 이적으로 간주되어 묘역의 실재를 확정짓는 증거로 작용하였다. 이 돌을 찾아낸 이관우와 역정(役丁) 서여남(徐汝南)은 이로 인해 각각 40원을 상금으로 받게 된다.³²⁾ 그리고 이 방석이 나온 곳을 중심으로 높이 4척에 둘레가 89척, 용미(龍尾)의 길이가 26척인 봉분이 만들어졌다.³³⁾

애초 건지산에 단을 건립하려 한 것은 시조묘의 묘역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전에 의하면 조상의 제사에서 제단을 건립하는 것은 세대가 올라가 더 이상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조상을 임시로 제사지낼 때 사용되었다.³⁴⁾ 그러나 실제 조선시대에 제단의 건립은 세월이 흘러 망실된 조상의 묘소 대신으로 사용되었다.³⁵⁾ 조경단의 건립 역시 실전된 시조 묘소를 대신하여 제단을 설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묘(假墓)를 세우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우연찮게 발견한 괴석은 이곳이 시조의 묘역이란 확실성까지 보태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정자각(丁字閣)을 두어 제장으로 삼는 일반적인 능원의 형식과 달리 무덤 앞에 제단이 있는 독특한 형식이 되었다.

IV. 결론

조경단은 무덤을 배경으로 한 유적이다. 조선시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사당과 무덤의 서로 다른 제장에서 이루어졌다. 인귀(人鬼)에 대한 일반적 제장(祭場)이었던 사당은 공간적으로 시신의 소재지로부터 벗어나 세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곳 이상의 지역에 세워질 수 있다. 그러나 무덤은 애초 제장이란 목적보다 시신의 안장이란 목적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었다. 즉, 시신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더욱이 고례(古禮)에 나타나지 않는 제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묘제(墓祭)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체백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제장으로서의 무덤은 사당과 달리 시신이 있는 한 곳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제장이었다.

이런 공간적 특징으로 인하여 묘소는 제사 대상의 역사적 현존을 사당보다 훨씬 강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무덤의 존재는 시신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시조와 그의 묘에 대한 관심은 비단 왕실만은 현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종의 발달 속에서 모든 가문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시조를 찾던 시기가 조선후기였다. 시조의 무덤은 문종의 유구한 역사를 보증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 왕실

32)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上, 移照, 己亥五月十六日照會 全州營建堂上.

33) 위의 책, 詔勅, 乙亥 5月 27日 全州奉審宰臣 李載崐書

34) 『禮記』「祭法」, “天下有王分地建國置都立邑設廟祧壇墀而祭之 乃為親疏多少之數 是故王立七廟一壇一墀 曰考廟 曰王考廟 曰皇考廟 曰顯考廟 曰祖考廟 皆月祭之 遠廟為祧 有二祧享嘗乃止 去祧為壇 去壇為墀 壇墀有禱焉祭之無禱乃止 去墀曰鬼”

35) 『承政院日記』英祖 47年(1771) 12月 3日. “噫 委巷士夫之家 於其先祖之墓 雖世級玄遠 而必行歲祭之禮 苟或失其墓而傳疑 則輒於墓門之外 亦必設壇而行祭”. 이 구절은 영조 47년 조경묘가 건립된 후 이희장·이희충 두 사람이 삼척의 이양무 묘에도 제사를 지낼 것을 건의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 건지산에 선뜻 시조묘역을 조성하지 않고 끝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신라와 고려 때 문헌이 부족하여 조기(肇基)의 사실을 영구히 징험할 수 없다”라는 『선원계보기략』의 언급은 조선후기 상황에서 찾기 어려운 지적인 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 조경단 건립은 조선후기 읍지의 기록을 근거로 시조묘와 건지산 봉호를 연결시켰다. 이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세전 또는 언전으로 전해져오던 시조묘 관련 이야기, 곧 건지산에 시조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작업이었다. 조경단 옆의 비석에 새겨진 고종 어제 음기에는 이재곤이 올린 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건지산을 조선초기부터 수호하고 영조대 금양조치한 것 등이 모두 시조의 묘역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³⁶⁾ 그리고 징험할 자료가 없어 시조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선원계보기략』은 이제 “시조묘가 전주 건지산에 있었다는 사실이 『경기전역』과 전주 읍지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광무 3년에 예신을 보내어 봉심하고 묘소에 흙을 더하였다”라고 적었다.³⁷⁾ 구전으로 전래되어온 건지산 시조묘역에 관한 이야기가 조선후기 읍지에서 ‘세전’이란 단서를 달고서 기록되었고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제단과 비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공인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건지산 시조묘역의 역사화’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이런 역사화를 가능케 한 자료가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 역사화를 보증하는 것은 건지산에 대한 풍수적 이해와 조성 과정에 나온 석물이었다. 그러므로 시조묘역의 역사화는 신화화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조경단의 건립이 시조의 역사적 사실보다 당시 문화적 정황과 시대적 상황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조경단 건립을 시작으로 1899년 전주 오목대, 자만동, 완산 등에 황실 관련 기념비가 세워지고, 삼척에서는 준경묘(濬慶墓), 영경묘(永慶墓)가 새로 정비되었다. 역시 같은 해에 태조와 장종(莊宗), 정종(正宗 ; 正祖), 순조(純祖), 익종(翼宗)을 황제로 추존하고 태조의 신위를 환구단에 모셨으며, 1901년(광무 5)에는 개성에 목청전을 복원하여 태조의 진전을 봉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황실존숭사업이라 부를 수 있다.³⁸⁾ 이러한 황실존숭사업은 대종가(太宗家)로서의 황실을 국가의 중심 상징으로 삼아 독립과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직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선조는 우리 조종이 돌보고 키워준 어진 신하와 백성인 만큼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너희 선조의 충성과 사랑을 이어서 나의 돌봄과 키움을 받는 어진 신하와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국왕과 백성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조종의 은혜와 선조의 충성이었다. 조경단 건립을 비롯한 황실 존숭 사업은 바로 이러한 기억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36)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上, 「御製肇慶壇碑石」, “惟我藝祖創業之初封其山而守護 命該道臣奉審 及英祖朝審驗瑩域基識而無有得 因掘去傍近民塚 置監官山直定界禁養 嗚呼殿儀與邑誌昭載 兩聖朝追遠崇奉之懿式”

37) 『承政院日記』 高宗 36年(1899) 4月 19日 ; 1900년 건지산에 조경단이 건립된 후 편찬된 『선원계보기략』의 범례에는 이전의 글 다음에 “先公墓在全州府乾止山昭載於慶基殿儀及全州邑誌光武三年己亥 命禮臣奉審加土于墓所”라고 덧붙이고 있다[『濬源系譜記略』(藏 K2-1026, K2-1027, 1901, 광무5)].

38) 서진교, 「대한제국기 황제권 강화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38~ 59쪽.

조경단의 건축 특성과 문화재구역 설정

홍승재*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경단의 건축 특성
- III.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설정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도의 수부(首府)이며,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풍패지향(豊沛之鄉)이었다.¹⁾ 조선은 개국 초 전주에 태조의 어진을 모시는 경기전을 건립하고, 실록각을 설치하는 등 전주가 왕실의 본향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기전 외에 풍패지향과 관련된 전주의 유적으로는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이 있다. 조경묘는 전주 이씨 시조와 시조비의 사당이다. 1771년(영조 47)에 경기전 북쪽에 건립하였으며, 1899년(고종 36)에는 시조의 묘역에 조경단을 조성하였다. 조경단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황제권의 강화와 황실존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삼척의 준경묘와 영경묘 조성 작업도 같이 이루어졌으며, 이목대, 오목대, 완산에 비를 세워 성역화 하였다. 전주부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객사는 ‘豊沛之館’이란 편액을 걸었으며, 부성의 남문과 서문도 ‘豊沛’에서 이름을 따 풍남문과 패서문²⁾이라 하여 전주가 풍패지향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는 조경단의 건축특성을 고찰하고, 조경단의 입지와 건축 구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구역의 설정 및 현상변경허용기준 등을 검토 제안하려고 한다. 조경단의 건축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전주 이씨의 시조는 통일신라 문성왕 때 사공 벼슬을 지낸 이한(李翰)이며, 그 부인 경주 김씨는 태종 무열왕의 11대손으로 군윤(軍尹)을 역임한 김은의(金殷義)의 딸이다. 태조 이성계는 시조 이한의 21대손이 된다. 이성계 집안이 전주를 떠난 것은 그의 고조부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 때이다.

2) 1767년(영조43)에 서문 밖 민가에서 일어난 불이 성안으로 번지며 서문과 남문, 관아 100여동과 민가 1000여채가 피해를 입었다. 관찰사 홍낙인(洪樂仁)이 서문과 남문을 중건하고 명건루였던 남문을 풍남문, 상서문이었던 서문을 패서문으로 개명하였다.

과 구성은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및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는 조경단의 조성과정과 공역(工役), 재용(財用), 수호절목(守護節目)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조경단의 건축과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은 조경단의 입지와 풍수 형국을 보여주며,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은 단과 건축, 비석의 제도를 기록과 함께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사료와 현재의 조경단 모습을 비교 분석하여 조경단의 건축특성과 문화재적 가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경단의 건축 특성

1) 입지 및 배치

조경단이 있는 건지산(乾止山)은 전주의 진산(鎭山)이다. 건지산은 산세와 형국으로만 본다면 동쪽의 기린봉과 승암산에 비해 높이가 낮고, 주산으로서 형국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비보하기 위해서 진산의 이름을 건지산(乾止山)이라 하고, 지세한 허한 서북방에 제방을 쌓아 덕진제를 만들었다. 또한 절을 창건하여 건흥사(乾興寺)라 하였으며, 건지산 서쪽에 있는 작은 산을 가련산(可連山)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³⁾

한 고을의 진산은 산의 높이, 형세와 형국, 거리, 방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건지산은 남향이라는 방위적 조건 외에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건지산은 전주의 주산이며 경기전의 주맥으로 간주되어 국초부터 보호되었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전주지도를 보면 건지산을 주산으로 객사와 감영, 경기전 등 부성의 주요시설이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전주부성의 입지와 공간계획에는 한양의 도성계획과 같이 풍수사상과 유교 국가의 이상이 담겨졌다. 부성의 중심에 객사가 북좌남면(北坐南面)하여 자리하고,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부성의 동남쪽에 경기전이 자리잡았다. 객사 뒷마당에 인공의 산을 조성하고, 1734년 전주부성을 개축할 때 북문에만 옹성을 남겨둔 것도 기능적 측면 보다는 비보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비보를 하면서 건지산을 진산으로 삼은 것은 풍수적 측면 보다는 유교적 예제가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건지산에는 일찍부터 전주이씨 시조묘가 있다고 전해져 왔다.

조선 왕실에서 건지산의 묘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영조 대이다. 학림군(鶴林君) 이육(李燾)의 상소(1765), 1771년 봉상시정(奉常寺正) 이정중(李廷重)의 상소 및 이득리(李得履)를 비롯한 전주이씨 유생들의 상소는 시조의 사당인 조경묘 건립에 이르게

3) 『중종실록』 55권, 1525년(중종 20) 8월 1일 무자

된다.

조경단의 영건은 1898년 의정부찬정 이종건(李鍾健)의 시조 묘역 관리에 대한 상소⁴⁾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상소는 종정원의 논의를 거쳐, 고종은 건지산에 제단과 비석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이를 위해 1899년 3월 10일에 조경단영건청(肇慶壇營建廳)을 신설하고 장례원경 이호익, 장례원소경 심상항,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 등을 영건청 당상으로 임명하였다.⁵⁾ 4월 22일(양)에 전주봉심재신(全州奉審宰臣) 이재곤(李在崐)이 전주로 출발함으로써 조경단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주에 도착한 이재곤은 관찰사 이완용과 함께 건지산을 직접 답사하고 제단을 세울 곳과 봉표(封標)의 한계를 정하였다.

조경단의 입지와 형국은 <전주건지산도형>에 잘 표현되어 있다. <전주건지산도형>은 의묘소를 표기된 시조묘를 중심으로 풍수적 형국과 산세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靑色遠山, 綠色局內山’이라 기록하여, 그림에서 청색은 먼 산(遠山), 녹색은 형국 안의 산(局內山)을 묘사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전주건지산도형(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전주건지산도형>을 보면 마이산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기린봉으로 이어지고, 다시 도솔봉으로 내려와 왕자봉(王字峰)으로 이어지며 그 아래쪽에 조경단이 자리하고 있다. 조경단은 시조묘를 중심으로 명당의 형국을 잘 갖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왕자봉에서 이어지는 용맥을 배산으로 삼아 의묘소가 을좌(乙坐)향으로 앉고, 묘

4)『고종실록』 35년 10월 24일(양력)

5)『조경단준경묘영경묘중건청의궤』 상, 조직, 기해년 정월 29일

소 아래에 단소와 비각, 홍살문이 그려있다. 묘역은 청룡과 백호가 좌우로 둘러싸고 전면에 낮게 안산(案山)이 있어 사산(四山)이 잘 갖춰진 모습이다. 그 밖으로 외사산이 둘러싸며 내사산과 외사산 사이에는 도솔봉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좌우로 흐른다. 이 물은 안산 앞에서 합류하여 덕진제에 모인다.⁶⁾ 조경단의 실제 산세는 좌측 청룡의 산세가 약하여 도형과는 차이가 있다. <전주건지산도형>은 시조묘가 풍수적 길지임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전주봉심재신(全州奉審宰臣) 이재곤(李在峴)은 시조묘의 봉역(封域)에 대해 풍수적으로 길지이고, 형세가 맑고 아름다워 만년토록 무궁한 국가의 복이 이 산에서 말미암은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다.⁷⁾ 시조묘가 왕자봉(王字峰) 아래 명당에 자리하고 있어 후손에서 왕이 나왔고, 조선의 왕실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풍수적 해석은 그동안 세전되던 시조묘의 위치 비정에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전주건지산도형>은 봉심재신(奉審宰臣) 이재곤의 풍수적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⁸⁾

조경단은 단소(壇所) 영역과 재실(齋室) 영역이 나뉘어 있다. 단소 영역은 의묘소(疑墓所)가 乙坐辛向으로 자리하였고, 그 아래에 단소와 비각이 있다.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는 단소와 재실 영역을 자세히 묘사하고 각 건물의 칸수와 크기, 거리, 좌향 등을 기록되어 있다. 단소는 묘소 앞 우측 72척 6촌 거리에 서향(卯坐)하여 조성하였다. 비각은 묘소 앞 우측(申方)으로 81척 떨어진 곳에 자리하였다. 비각의 정면은 단소를 향하였으며, 단과 비각의 거리의 27척 3촌이다. 묘역의 입구에는 홍살문을 세워 경계를 표하였다. 홍살문 앞 왼쪽에는 하마석이 있고, 단소의 왼쪽 뒤에는 축문(祝文)을 태우는 소축석(燒祝石)이 있다. 지금은 홍살문 앞에 삼문을 세우고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 예전보다 앞쪽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재실은 묘역 우측 용수동(龍首洞)에 건립하였다. 단에서 亥方(북북서)으로 409척 떨어진 곳에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재실 영역은 재실, 향대청(전사청)⁹⁾, 제기고, 대문행각 등으로 구성되었다. 재실과 대문행각은 남향하였고, 제기고는 앞마당을 향해 서향하고 있다. 향대청은 재실 서쪽에 자리하여 재실과 같은 좌향을 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향대청이 없고 재실의 동쪽에 관리사가 자리하고 있다. 재실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묘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실은 묘역의 입구에 위치하며 진입공간을 형성한다. 조선시대 능제를 보면 죽은자와 산자가 만나는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6) 덕진제 앞에 있는 승금정은 전주이씨들이 시조에 대한 추모의 정을 펼치기 위해 조경단을 건립할 즈음에 세운 것이다. 『고종실록』 39권, 1899년 5월 27일 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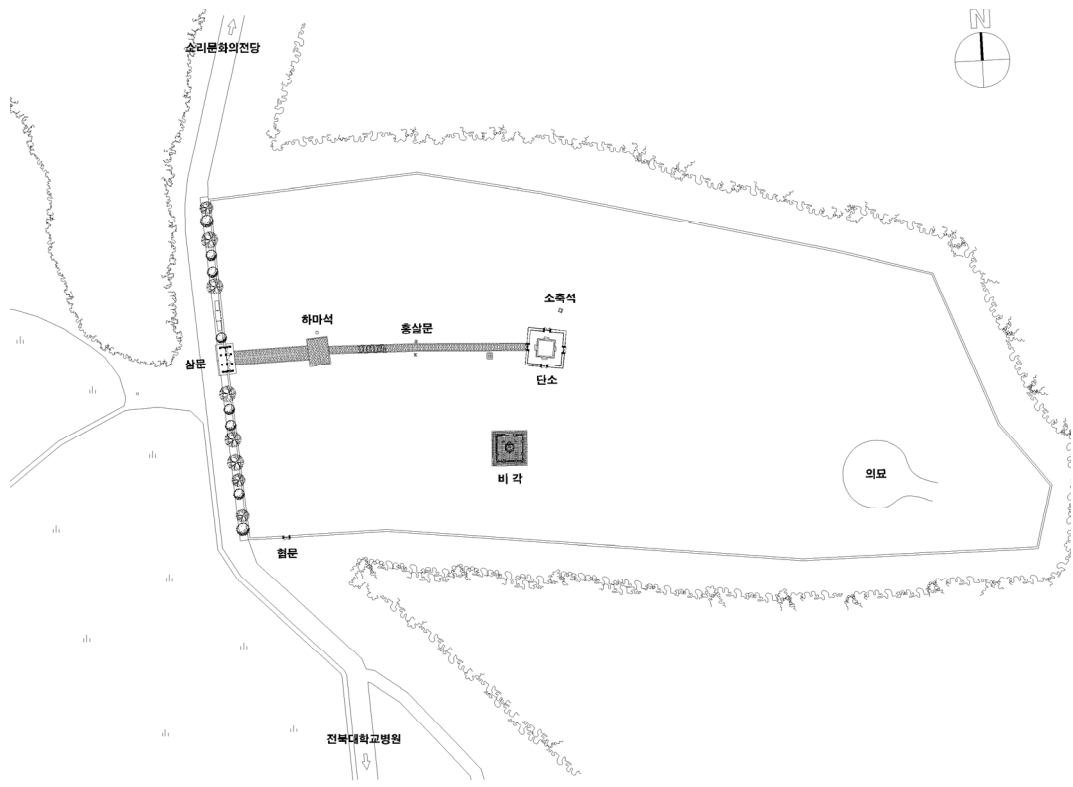
7)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4월 18일(음미, 양력 5월 27일)
“주룡(主龍)에서 내려다보니, 모래 언덕이 조금 높고 산세가 꺾인 듯한 형상이며 아래는 사초(莎草)가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 곳이 시조묘라 전하는 곳이다. (중략) 국(局)의 형세는 맑고 아름다워 이 산처럼 좋은 곳을 보지 못했으며, 만년토록 무궁한 국가의 복이 이 산에서 말미암은 듯하다”

8) 이재곤은 전주의 주산을 발리봉으로 보고 있다. 산천의 형세로 볼 때 마이산-기린봉-승암산-발리봉-오목대로 맥이 이어지며, 발리산은 목조가 살았던 터이므로 풍패의 주산이고, 경기전과 조경묘의 내맥(來脈)이라고 주장하였다. 『全州府乾止山禁養節目臚抄』(규 9740), 광무3년 음력기해 3월일

9) 『조경묘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에는 전사청이 없고 향대청이란 기록이 있다. 반면에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는 향대청이 없고 전사청을 그려 놓았다.

재실 등이 자리한 진입공간은 산 자의 공간이고, 홍살문은 지나 정자각이 있는 곳은 혼백과 참배자가 만나는 제향공간이다. 그 위에 죽은자의 공간인 능침영역이 있다.¹⁰⁾ 제향영역과 능침영역은 단차를 크게 두어 능침공간의 신성함과 위계를 표현한다. 조경단 단소는 제향의 공간인 정자각에 해당한다. 능침의 진입공간은 금천교, 연지, 재실 등을 거쳐 홍살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경단은 진입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단소와 재실영역이 나뉘진 것처럼 인식된다. 그것은 단소의 위치와 지형적 조건 때문으로 보인다. 산세에 맞추어 단소가 낮게 자리하다 보니 단소 앞쪽에는 재실 영역을 들만한 마땅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재실영역은 지형 여건과 진입공간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조경단 단소의 북쪽에는 전주실내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덕진체련공원,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재실의 동쪽에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있다. 재실과 단소 사이에 4차선 도로가 관통하여 묘역과 재실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조경단 배치도 (묘소, 단소, 비각 등)

10)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2,문화재연구소 , 2011, P.17

2) 건축 구성

조경단에는 단소(壇所) 외에 비각과 재실 등 여러 건물이 있다. 조경단의 건축과 구성은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는 조경단의 조성과정, 공역(工役), 재용(財用), 수호절목(守護節目)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조경단의 건축과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절에서는 원광대학교 건축사연구실에서 실측조사 한 자료와 비교하며 각 건축물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단(壇)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 조경단(肇慶壇)은 묘좌(卯坐)로 정서향하였으며, 단의 높이는 3척이고 길이는 20척이다. 곡장(曲墻)은 사방 각 40척으로 주척(周尺)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壇)의 제도는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단의 위치는 지형을 봉심한 이재곤의 의견에 따라 묘역이 보이는 묘소 아래에 지형에 맞추어 정해졌고, 길이와 폭도 지형에 따랐다. 단의 높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우리나라 각 처에 있는 단소의 높이를 묻자 이재곤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직단의 높이가 5척¹¹⁾ 남짓인 것을 제외하고 각 단의 높이는 2척 7촌 안팎이라고 답한다’. 이에 따라 임금은 조경단의 높이를 3척을 기준으로 지형의 형세에 맞추어 조성하도록 하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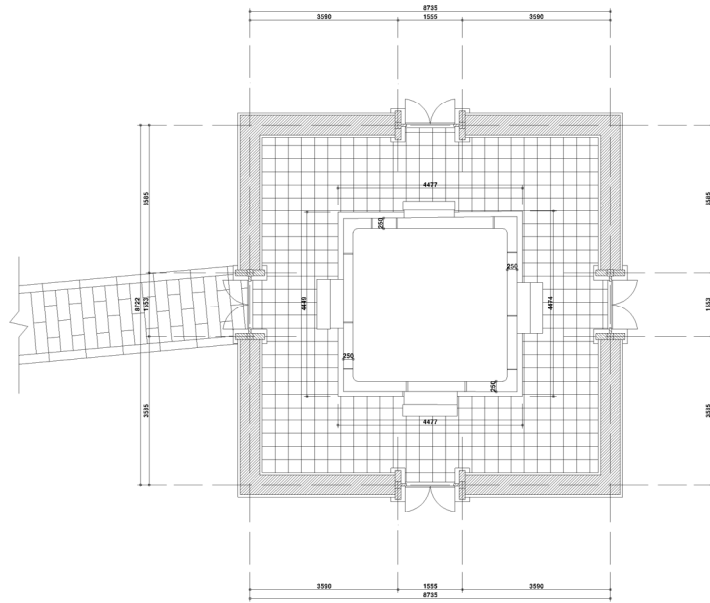
단(壇)은 지대석 위에 장대석 2단을 쌓아 조성하였으며, 사방에 계단을 시설하였다. 단의 폭은 4,176~4,237mm이고, 단의 높이는 698~720mm 내외이다. 주척으로 계산할 때 단의 폭은 20척~21척이며, 높이는 3.5척~3.6척이다. 폭은 주척 20척에 맞추었고, 단의 높이는 기록과 같이 3척을 기준으로 지형에 맞추어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단은 사방에 담장을 설치하고 일각문을 냈다. 단소의 북동쪽에는 축문을 태우는 소축석이 있다.



단소 전경

11) 조선시대 사직단의 높이는 3척이며, 너비가 2장5척(25척)이다.

12)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3월 13일(경신, 양력 4월 22).



단소 평면도 (위쪽이 북쪽)

(2) 비각

조경단 비각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정방형 평면이다. 내부에 4개의 고주를 세워 내진을 구성하고, 그 안에 비를 설치하였다. 고주의 주간(柱間)은 3,060~3,140mm으로 영조척 10척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면은 고주열 밖으로 4면에 퇴가 둘러있는 모습이다. 주칸은 어칸 10척, 협칸 5척으로 어칸과 협칸의 비가 2:1의 비례를 하고 있다.

비각은 장대석 외별대 기단과 잘 다듬은 원형 초석을 사용하였다. 내부의 초석은 한변이 750mm의 방형 기저부 위에 고복형으로 주좌를 다듬었고, 외진주의 초석은 주좌와 고막이석을 일체로 제작하였다. 기둥은 두리기둥이며 공포는 재주두가 있는 이익공형식이다. 수서형의 익공과 행공첨차는 조선시대의 일반적 형식으로 조각 수법이 우수하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화반을 끼워 넣었으며, 화반 위에는 소로를 놓고 운공을 끼워 장식성을 높였다. 창호는 정면 어칸에만 달았는데 판문 위에 철물로 장식하였다. 그 밖의 벽체는 하부에 고막이석을 돌리고 그 위에 전벽돌을 쌓았으며 상부는 살창으로 처리하였다.

지붕가구는 2고주 5량구조이다. 고주와 평주는 뒷보를 결구하였다. 천장은 중앙부에 우물천장¹³⁾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지붕 위는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망와를 사용하고,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를 놓고 솟마루장으로 마감하였다.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에는 조경단 비각에 용

13) 우물천장은 가로 세로 6칸씩 모두 36칸의 모습이다. 그러나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의 기록에는 송각(崇閣)이라고 하여 장다란(長多欄) 8개, 동다란(同多欄) 24개, 청판 25립(立), 소란(小欄) 100개를 사용하였다 기록되어 있어 우물천장이 가로 세로 각 5칸씩 모두 25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4좌와 잡상 24좌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용두와 잡상은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사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비각의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양성바름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비각은 현 모습은 지붕부의 용두와 잡상 등을 제외하고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의 모습과 같다. 비각은 사용된 부재가 건실하며 장식성을 높인 우수한 건축물로 조선후기 건축 양식을 잘 지니고 있다.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를 보면 비각은 목부재와 기와 등 대부분의 자재를 2개의 관아 건물을 뜯어다가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⁴⁾ 조선시대에 이처럼 잘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고, 화려한 장식을 지닌 건물이라면 그 관아의 격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경단(肇慶壇) 유리원판 사진, 1910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재실 영역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을 보면 재실영역은 재실, 전사청, 제기고가 있고, 주위는 대문행각과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재실의 오른쪽에는 ‘재실 10칸, 전사청 3칸, 제기고 2칸, 행각 8칸, 담장 41칸’이라 쓴 글씨가 보인다.

도형에는 재실이 정면 5칸에 측면 3칸의 팔작집으로 그려져 있다. 전퇴에는 모두 마루가 있고, 서쪽부터 방 2칸, 대청 2칸, 건너방 1칸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재실은 기록과 같이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10칸의 규모이다. 실의 구성은 도형과 같지만 건너방 앞에 뒷마루가 없다.

재실 상량문에는 ‘광무3년 기해(己亥) 5월 초2일 진시(辰時) 입주(立柱), 동월 초3일

14) 兩種公廨毀撤件利用



조경단비각재실도형 중 재실영역 확대

진시(辰時) 상량(上梁) 자좌(子坐)라 기록되어 있어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의 기록과 일치한다. 현재 재실을 보면 기둥 하부에 동바리이음이 된 곳이 많이 있다. 그리고 뒤쪽 기둥에도 벽체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장부구멍이 남아 있다. 대들보 하부에도 문선을 끼웠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실이 영건의궤의 기록 처럼 다른 건물을 뜯어다가 세운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전사청(典祀廳)은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 정면 2칸의 맞배집 모습이다. 전체가 3칸 이고 전면 퇴칸에 마루가 깔려 있으므로 정면 2칸, 측면 1.5칸 규모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공역(工役)에는 전사청은 없고, 대신에 향대청(香大廳)이 기록되어 있으며 규모는 4칸이다. 향대청의 소입(所入) 물량 중 건축 형태와 관련된 주요 부재의 물량을 보면 초석 8개, 기둥 8개, 대량 1개, 추녀 4 개 등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규모 4칸은 평면이 정면 4칸, 측면 1칸이거나 정면 2칸, 측면 2칸의 형태이다. 4칸 일자집일때는 초석과 기둥이 10개가 필요하다. 또한 대량의 수도 3개가 있어야 한다. 대량이 하나이면 2칸 겹집을 생각할 수 있으나 평면과 소입 물량으로 볼 때 일반적인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 추녀가 4개가 있으므로 지붕은 우진각 또는 팔작지붕의 형태이므로 도형 속의 전사청과 기록 상의 향대청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 현재 전사청은 멸실되었고 그 자리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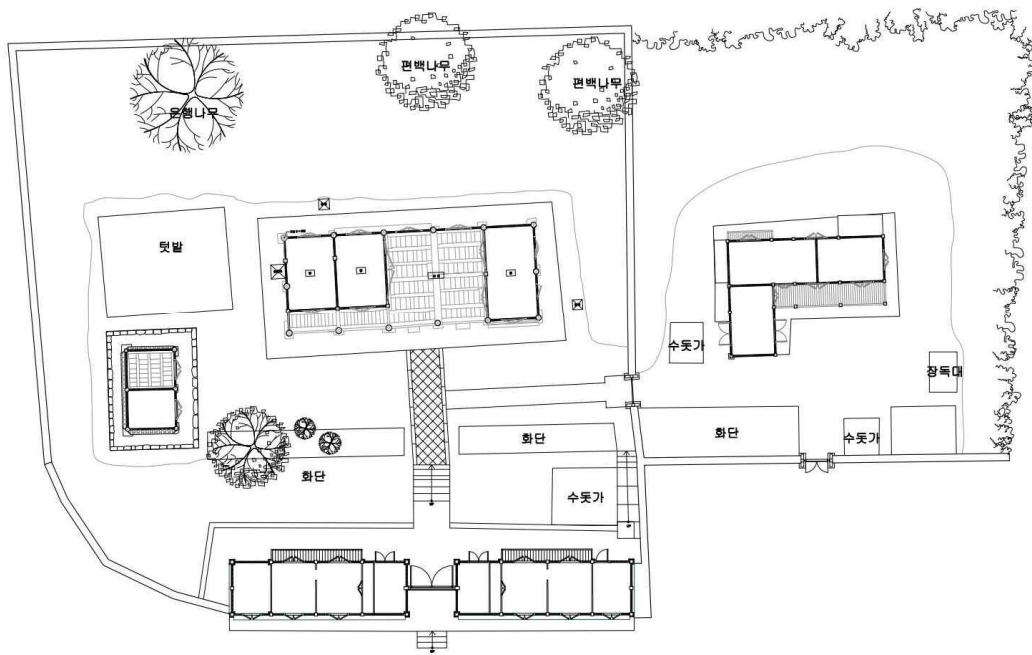
제기고는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 맞배집으로 기와를 올렸으며 2칸이라 기록되어 있다. 벽체를 보면 하부는 화방벽으로 구성하고 상부는 판벽으로 그렸다. 제기고는 현재의 모습과 칸 수가 동일하다.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공역(工役)을 보면 제기고도 다른 관아 건물을 뜯어다가 지었다.

대문행각은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 8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 정면 이 10칸이다.¹⁵⁾ 행각 중간에 고주대문(高柱大門)이라고 기록한 솟을대문이 있다. 솟을

대문 옆에는 평상시에 출입하는 또 하나의 작은 문이 있다. 벽체 하부는 화방벽이며 상부는 부분적으로 살창과 판벽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각의 모습은 현재의 대문행각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대문행각은 정면 9칸이다.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평면과 외관을 보여준다. 중앙에 솟을대문을 두고 대문의 좌우에 부엌이 있으며 부엌 옆으로는 방 2칸이 이어지고 그 옆으로 헛간 또는 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행각은 기둥하부에 콘크리트초석이 사용되었다. 현재 대문행각에는 상량문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건립연대를 알기 어렵지만 초석을 볼 때 후대에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건당시에는 없었던 관리사도 콘크리트 초석이 사용되었음을 볼 때 대문행각과 관리사는 동일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54년도 항공사진에서는 대문행각과 관리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재실 일곽의 여러 건물들 현황과 의궤서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본 때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공사를 다 마친 후에 그린 것이 아니라 공사 전에 그린 계획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도형의 제작 목적은 조경단 조성에 궁급해 하던 고종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그림> 조경단 재실 배치도

15)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에서도 10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6)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이조(移照)를 보면 고종은 1899년 4월 18일 함경도관찰사에게 함경도내 각 능에 있는 석물의 규격과 정자각, 비각, 재실, 전사청의 제도 및 칸수를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상세히 기록하여 시급히 올리라고 훈령을 내린다. 그 이유는 당시 전주 조경단을 비롯하여 삼척에 준경묘와 영경묘를 조성하면서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조경단비각재실도형>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설정

조경단이 위치한 건지산은 왕실의 본향인 전주의 진산(鎭山)으로 국초부터 산을 봉하여 수호하게 하였다. 경기전을 창건한 뒤에는 특별히 엄하게 금호(禁護)하고 진전비보소(眞殿裨補所)라 이름하였으며, 갑술년 양전 때에 금표(禁標)를 세워 나무 하나도 베지 못하고 한 자의 땅도 일구지 못하게 하였다.¹⁷⁾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목과 경작, 투장(偷葬)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정조 대에는 시조묘와 관련하여 건지산을 살펴보고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1899년 조경단을 조성하면서 작성한 『전주부건지산금양절목등초』의 금양절목(禁養節目)에는 1782년부터 1784년까지 건지산의 모경(冒耕)과 범장(犯葬) 폐단에 대한 조사 내용과 각종 보고의 내용 등을 잘 정리하여 등서(謄書)되어 있다. 이는 건지산의 수호 경계를 정묘조(正廟朝)의 수호절목에 의거하여 정하라는 왕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¹⁸⁾

이에 따라 조경단봉심관 이재곤은 조경단을 중심으로 사방 약 1,700여 척에 이르는 지경까지 금표의 한계를 정하였다. 조경단 수호절목의 사방의 주요 경계는 아래 표와 같다.

방향	길이	합
동	栢洞里前大路 1680척	3360 척
서	德津池西堰 1680척	
남	劔巖里 東山門 1880척	3520 척
북	沙斤堤後麓 1640척	

조경단의 문화재구역과 보호범위 설정에는 조경단의 입지와 건축적 특징,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경단을 둘러싼 산세와 형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주건지산도형>에서 볼 수 있다. 도형에서는 도솔봉 - 왕자봉 - 묘역으로 이어지는 주맥과 의묘소와 단소, 비각을 둘러싼 내사산과 외사산 등을 녹색을 칠하여 국(局) 안의 산(局內山)으로 표현하고 있다. 풍수적 형국으로만 본다면 크기는 이 범위가 보호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는 덕진제를 포함한 건지산 일대가 모두 왕실의 소유였고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인근에 전주동물원이 들어섰고 현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덕진체련공원, 전주배드민턴장들이 들어서면서 주변환경은 많이 변하였다. 특히 4차선 도로로 인해서 재실 영역은 단소 영역과 완전히 단절되어 별도의 공간처럼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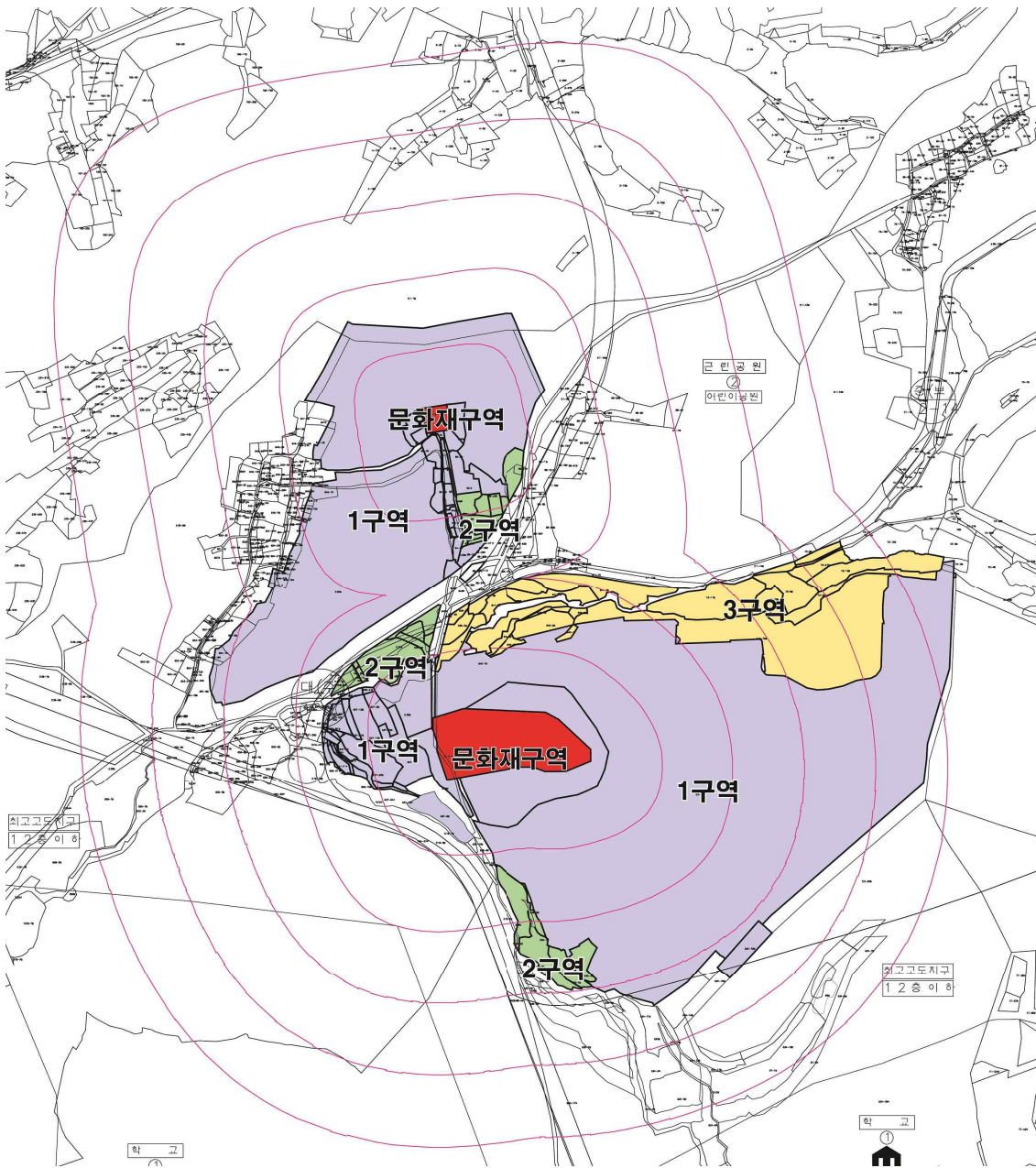
현재 조경단은 단소, 비각, 의묘소 영역만 전라북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재실은 지정에서 빠지면서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실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능원(陵園)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재실에 대한 문화재 추가지정과 함께 단절된 두 영역의 공간적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과 조경단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하여 수정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7)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1652) 8월 21일 경신.

18) 승정원일기, 고종 36년(1899) 기해, 3월 13일 (경신, 양력 4월 2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 3호 '조경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이하)	
제3구역	○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IV. 맺음말

조경단은 1899년에 조선왕실의 시조 이한의 묘가 있다고 전해지는 곳에 조성한 단묘이다. 조경단의 건립은 국초부터 시조묘로 전해지던 묘역에 단을 조성하고 비를 세워 공고히 함으로써 황실의 권위와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조경단을 조성하면서 오목대, 이목대, 완산에도 비를 세워 전주가 전주 이씨 발상지임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조경단은 경기전, 조경묘와 함께 풍패지향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조경단은 국가에서 창건하고, 1년에 한 번씩 국가제사를 지냈으며 능·원에 준하여 관리되어왔다. 조경단은 단소(壇所)를 조성하면서 비각, 재실, 향대청, 제기고, 대문행 각도 함께 건립하여 조선 왕실의 능원에 버금가는 격식을 갖추었다. 단(壇)의 제도는 사직단의 제도 등을 참고하였고, 건축에 사용된 부재들은 기존에 있던 관아 건물을 헐어다가 재사용한 것이다. 특히 비각은 기념비적 건물로서 장식성이 뛰어나다. 초석, 공포, 운공 등에서는 정교한 수법을 볼 수 있으며, 벽체 하부의 고막이석과 전벽돌을 사용한 화방벽의 구성, 철물 장식 등은 조선 후기의 건축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단소와 비각, 재실 등 주요 건축물들은 창건 당시의 구조와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조경단은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조경단은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전주건지산도형>, <조경단비각재실도형>, 『전주부건지산금양절목등초(全州府乾止山禁養節目膽抄)』, 『조경단비석부출마련기(肇慶壇碑石浮出磨鍊記)』, 『조경단역비명세서(肇慶壇役費明細書)』 등 관련 문헌과 도형이 잘 남아있다.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창건과정, 운영과 관리, 제기의 종류와 수, 건축 공사 내용과 금액등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재의 건물과 비교를 통해 그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사료 중 <전주건지산도형>은 조경단의 풍수 형국을 묘사하고 있다. 도형은 묘소를 중심으로 명당의 형국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지만 시조묘가 이와 같은 명당에 자리하고 있어 후손이 왕위에 오르고 누대에 걸쳐 복을 받는다는 풍수지리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경단의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설정에는 이와 같은 풍수지리적 관점과 건축적 특징, 주변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조경단은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로 볼 때 국가사적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경단과 같이 조성된 삼척의 준경묘와 영경묘는 2012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사적지정과 함께 조경단은 본래의 경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단절된 재실과 단소영역의 공간적 연결, 주변의 운동시설 등에 대한 단계별 정비, 명당수인 금천의 복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조경단의 문화재적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2020.10.30

조경묘, 조경단 활용방안

- 역사문화자원의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홍성덕 _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목차

-
- I. 머리말
 - II. 조경묘, 조경단 현황
 - III. 자원활용의 한계
 - IV. 연계성 활용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

• ‘전주’의 이미지 형성

- 전통문화중심도시
- 조선왕실 본향지
- 조선 태조 어진 - 경기전
- 전라도 수부 - 감영도시

- 핵심이미지 강화
- 지속가능한 이미지 형성

• ‘전주’ 도시이미지의 확대

- 한옥마을 중심 이미지의 탈피
- 전라감영의 복원과 감영문화 확산
-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 수립

- 도시이미지 확산
- 이미지 연계성 구축

II. 조경묘 · 조경단 현황

• 조경묘_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6호

- 전주이씨 시조 이한, 비 경주김씨의 위패 봉안
- 이성계 이한의 21대손
- 1771년(영조 47) 건립
- 세손 정조가 위패를 씌
- 이문용(상궁 염씨의 딸) 기거 (1975~1987)



Ⅱ. 조경묘 · 조경단 현황

- 조경단_전라북도기념물 제3호
- 전주이씨 시조 이한의 묘역
- 1899년(광무 3) 건립
- 대한조경단비 _ 고종 어필



Ⅱ. 조경묘 · 조경단 현황

	조경묘	조경단
위치	한옥마을 경기전 내	건지산 내
성격	사당	제단
개방	상시개방 하지 않음	상시개방 하지 않음
건물	원형 부존	원형
활용	제향	제향
관리	상주 관리	비 상주 관리
시설	박물관, 주차장 등	주차장(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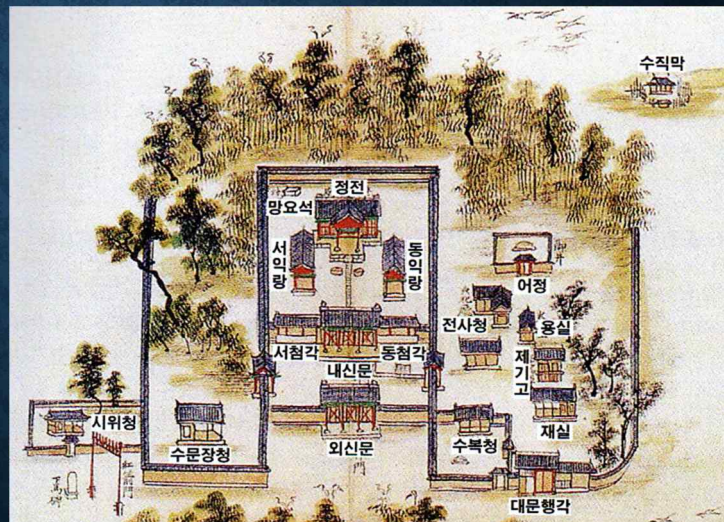
Ⅲ. 자원활용의 한계

- 조경묘
 - 정전, 동익랑, 서익랑
 - 내신문(동침각, 서침각)
 - 외신문
 - 부속채
(전사청, 재실, 문간채, 어정)



Ⅲ. 자원활용의 한계

- 조경묘
(조경묘경기전도형)
- 건물의 구성 변화
일제강점기 일부
훼손



조경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서

Ⅲ. 자원활용의 한계

조경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서

구분	1782년 조경묘지 및 소배의물구별 성책	조경묘의	1872년 조경묘경기전수리 등록	완산부지도	조경묘경기전 도형	1936년도 수리공사철
별전 (이안청)	-	-	3칸	-	-	-
제기고	2층 제기루	관고 2칸	2칸	3칸	2층 2칸	2층 2칸
전사청	6칸	6칸	5칸	ㄱ자형 6칸	ㄱ자형	ㄱ자형 7칸
용실	2칸	2칸	2칸	서향 2칸	서향	창고 2칸
재실	4칸	4칸	4칸+2칸	재소 3칸	5칸	9칸(정면 5칸)
유사청	3칸 향대청	3칸 현관청	3칸	3칸 연실	건물이 있으나 명칭은 없음	4.5칸(정면3칸) 서재
문간행각	5칸	6칸(그림)	재실전랑(前廊) 6칸	2칸	4칸	5칸
수문장청	-	3칸(그림)	수문장직소 4칸	3칸	3칸	-
시위청	-	3칸	3칸 신건	3칸	3칸	-
어정	있음	있음	어정(御井)	-	있음	있음
수복청	5칸	ㄱ자형 3칸	8칸	ㄱ자형 5칸	3칸	ㄷ자형 6칸
수직막	총의위수직방	있음(그림)	3칸 신건	3칸	3칸	-
성상청	-	있음	-	-	-	-
홍살문	있음	1칸	1칸	1칸	1칸	-

Ⅲ. 자원활용의 한계

- 조경단(제단과 재실의 공간 분리)
 - 조경단, 대한조경단비
 - 재실
- 덕진제
 - 승금정(勝金亭) :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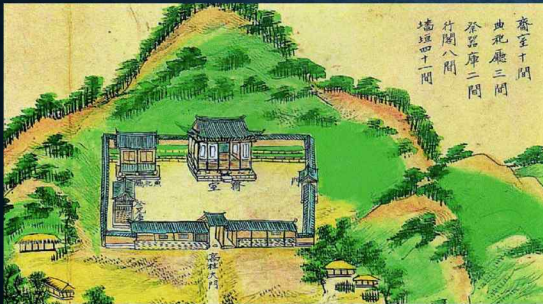


Ⅲ. 자원활용의 한계

조경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서

- 조경단
 - 건물의 일부 변화 확인

조경단비각재실도형



Ⅲ. 자원활용의 한계

- 상시적 관람 불가
 - 조경묘는 경기전 내 위치해 있어 관람객 접근이 용이
 - 조경단은 전지산 내 위치하여 시민 접근이 용이
- 전주이씨 문중 자원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북지원 관리
 - 조선왕실과의 연관성 인식 부족
 - '전주이씨' 한 문중의 유산으로 제한된 인식
 - '전주'의 도시정체성과의 관계성
- 두 자원의 연계조건 불편
 - 원거리 위치로 주제 중심의 관광연계성 부족

IV. 연계성 활용방안

개방성

- 폐쇄적 개방에서 정기적 개방으로

역사성

- 전주이씨에서 조선왕실의 본향으로

활용성

- 독립적 활용에서 연계적 활용으로

확장성

- 제한적 활용에서 확장된 활용으로

IV. 연계성 활용방안 _ 개방성

❖ 폐쇄적 개방에서 정기적 개방으로

- ✓조경묘 대례
- ✓생생문화재사업
- ✓삭망 분향례



IV. 연계성 활용방안 _ 개방성

➤ 사당(祠堂)의 위격(威格) 유지

- 출입시간, 방법 등의 제한을 통해 위상 정립
- ※ 경기전 일원의 위격과 연계

➤ 역사적 의미 전달 콘텐츠 확충

- 위패 공개 불가능 ⇒ 대응 방안 마련
- 스토리 콘텐츠 구현 ⇒ 시각화
- 콘텐츠 연결성 ⇒ 어진박물관 or 복원 후 전시관 조성

IV. 연계성 활용방안 _ 개방성

➤ 정기적 개방 방안

- 연 4회(분기별)로 시작, 월 1회, 2회로 정기 개방
- 단순 개방이 아닌 해설 중심의 교육적 개방
- 단계별 콘텐츠 확충을 통한 유입력 제고
- 어진박물관 운영과 연계
- 교육해설 정기 개방의 목적, 방향성 공유
- ※ ‘전주이씨’ 시조 ⇒ 조선 건국조의 시조 위상 정립 필요

IV. 연계성 활용방안 _ 개방성

- 삼척 준경묘 · 영경묘
봉심 재연 및 청명제

준경묘:

태조 5대조 이양무장군 무덤

영경묘:

이양무 부인 이씨



IV. 연계성 활용방안 _ 역사성

- ❖ 전주이씨 사당에서 조선왕실의 본향으로

- ✓ 조선왕실본향의 이미지 효과 미흡
- ✓ 폐쇄적 개방으로 인식 확산 미흡
- ✓ 단순 개방으로 이해 어려움



IV. 연계성 활용방안 _ 역사성

➤ 조선왕실본향 이미지 강화

- 성씨 시조사당이 아닌 조선왕실의 사당 의미 부여
- 전주도시브랜딩 내의 의미 강화

➤ 건국조 시조묘 콘텐츠 확충

- 한국 역사내 건국조 시조묘 콘텐츠로서 위상 정립
- 성씨 시조묘가 아닌 건국조 시조묘

IV. 연계성 활용방안 _ 역사성

➤ 역사성 확보 방안

- 조경묘 건립 과정의 의미 확충

“해동 조선이 덕을 쌓고 어짐을 축척함에서 비롯하였음을 이 조경묘를 통해 알 수 있다“

- 한국 역사 건국조 시조묘 스토리 개발 활용

“조경묘 내, 경기전 일원(어진박물관) 건국조 시조 · 시조묘 콘텐츠 확충 ”



어제수덕전편(御製樹德全篇), 영조 지음

IV. 연계성 활용방안 _ 역사성

➤ 역사성 확보 방안

- 한국의 성씨와 시조묘
“대전 뿌리공원” - 효 테마공원
- 건지산 일원 공원 조성
“한국의 시조묘 콘텐츠 확충”
“전주 본관 성씨 테마 공원 조성”



뿌리공원 244개 성씨 유래 조형물 설치

한국의 성씨, 본관 5,582성, 36,744본관(2015년 통계청)
전주본관 성씨 87개(전주역사박물관 조사보고서)

IV. 연계성 활용방안 _ 역사성

➤ 역사성 확보 방안



뿌리공원 244개 성씨 유래 조형물(여산송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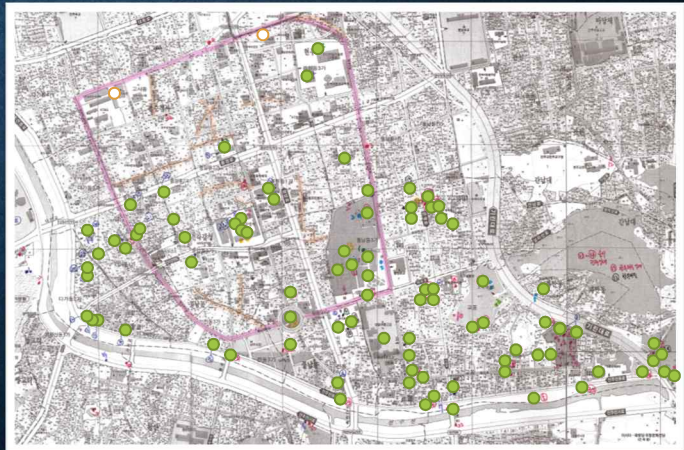


온조왕사당(천안)

IV. 연계성 활용방안 _ 활용성

❖ 독립적 활용에서 연계적 활용으로

- ✓ 자원 간 연계 강화
- ✓ 주제별 연계 강화



전주도심 역사문화자원 분포

IV. 연계성 활용방안 _ 활용성

➢ 자원 간 연계 강화 방안

- 조경묘 : 한옥마을 내 원활한 연계성 확보
- 조경단 : 덕진-건지산 일원 연계성 마련 필요
⇒ 덕진연못, 황극단, 독립추념탑, 최명희 묘
건지산, 조경단 재실, 오송제, 동물원 등
- ※ 전제요소 : 정기적 개방과 운영프로그램

IV. 연계성 활용방안 _ 활용성

➤ 주제별 연계 강화 방안

- 어진박물관 생생문화재 사업
지방비 투자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정기적 운영)
- 지역간 왕실 능원묘(陵園廟) 답사
전주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중 - 확대
- 시조묘(墓, 廟) 콘텐츠 개발
건국조 및 한국 주요 성씨 시조묘

IV. 연계성 활용방안 _ 확장성

❖ 제한적 활용에서 확장된 활용으로

- ✓ 내용의 확장
- ✓ 시설의 확장



IV. 연계성 활용방안 _ 확장성

❖ 내용의 확장

- 역사적 내용 확대
고종대 성역화 사업
왕실 능원묘(陵園廟) 확장
- 스토리 강화
고 이문용여사 조경묘 거주



[왼쪽부터 오영숙(전북도청 오영숙 국장), 박근혜(한마음병원 이사장), 황녀 이문용, 권송성(이문용 양아들), 1980년.]

IV. 연계성 활용방안 _ 확장성

❖ 내용의 확장

- 스토리 강화 : 경기전 · 조경묘 · 조경단

“서쪽에 어정(御井)이 있었다. 깊이가 수십 척이 되며 벽돌로 쌓고 쇠로 덮개를 만들었다.

대개 성안의 샘물 맛이 모두 나쁜데 이 곳이 가장 좋아 그 제일이리 한다”

“좌우에 8~9그루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즐기와 가지가 엉키고 구부러져 마치 용이 부르짖으며 뒤엉켜 싸우는 듯 하니 지극히 기이한 사물의 형상이다”(이하곤 1677~1724, 顛陀草)

- 연구와 교육

조경묘, 조경단 관련 자료 번역

조경묘, 조경단 중심으로 한국의 건국조 시조묘 및 성씨 시조묘의 의미 교육 확대

IV. 연계성 활용방안 _ 확장성

❖ 시설의 확장

- 어진박물관 확장 : 경기전과 조경묘의 전시공간 분리
- 조경묘 부속 건물 원형 복원 추진
 혜철된 건물 복원 후 활용(전시.교육)
- 조경단 앞 “한국 역사 건국(조) 박물관” 건립 추진
- 전주본관 성씨 시조 테마 공원 조성
 건지산 일원 성씨 시조 조형물 설치

V. 맺음말

- 조경묘 · 조경단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 전주이씨 문종이 아닌 건국의 정신으로
 - 조선 건국과 발전의 시작으로
- “경기전” 중심의 이미지와 분리
 - 경기전 일원의 공간적 인식 구분(경기전, 전주사고, 조경묘)
- 새로운 콘텐츠의 확충 - 활용 확대
 - 스토리 개발, 연구 교육 확대
 - 박물관 증축 및 시설 복원, 건립
 - 조경단 일원 자원의 연계 체계적 확충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조경단, 조경묘 학술대회

조경단·조경묘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존방안

토론문

1	조경묘 창건과 역사적 의미	085
	한문종 / 전북대학교	
2	조경묘 건축과 문화유산적 가치	087
	신웅주 / 조선대학교	
3	조경단 조성과 그 역사성	089
	하태규 / 전북대학교	
4	조경단 건축과 문화재구역 설정	091
	이상훈 / 전북도청 前학예연구관	
5	조경묘, 조경단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093
	이경찬 / 원광대학교	

「조경묘 창건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한문종*

전주는 조선왕조가 일어난 풍패지향이다. 조선에서는 건국 직후인 태종대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는 경기전을 창건하였으며, 영조 47년(1771) 왕실의 시조사당인 조경묘를, 1899년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성계의 주필지인 오목대와 고조인 목조 이안사의 구거지인 이목대를 기념하는 비를 세웠다. 이처럼 전주는 조선왕실의 뿌리로서 왕실 관련 유적과 유물이 매우 많이 있다.

이동희 관장의 발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조경묘 건립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의 풍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경묘의 창건 논의와 건립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후기인 영조 47년에 이르러 시조묘가 창건된 이유를 영조대의 정국 운영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조경묘 창건의 국가사적, 지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려 하였다. 특히 발표에서는 소론 4대신이 영조를 폐위시키려 했던 무신의 난과 경종의 독살 문제를 일단락 짓는 신유대훈, 사림정치에서 재상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임오화변 등 당시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조가 조경묘를 창건하여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려 하였으며, 이는 조선왕조 바로세우기 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조경묘의 건립은 조선왕조의 발상지, 풍패지향으로서 전주의 위상을 공고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지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동희 관장의 발표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경묘, 조경단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은 건국 후 고구려의 평양, 신라의 경주, 고려의 개경과 함께 태조가 태어난 영흥과 그 선조들이 살았던 전주에 태조어진의 전주봉안을 봉안하여 이 땅이 새 왕조 조선의 땅임을 표방하고 신민들의 충성과 결집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신라, 고려의 수도에 태조어진을 봉안하였던 것과는 달리 삼국의 하나인 백제의 수도에는 태조어진을 봉안하지 않았다. 조선왕조가 백제의 수도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선의 왕실과 조정에서는 백제 또는 백제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조선전기에는 이성계가 태어났던 영흥이나 그의 선조(익조·도조·환조)가 살았던 함흥, 넓게는 함길도를 풍패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인 광해군 6년(1614)에 이르러서야 전주에 대한 풍패 인식이 본격화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주와 전라도에 대한 중요성과 시조와 가문을 중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시하는 사회 풍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에 대한 풍패 인식이 본격화되는 광해군대 이전까지 조선의 왕 또는 조정은 전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종계변무는 명나라 『大明會典』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된 것을 주청하여 바로잡은 일이다. 조선에서는 1590년(선조 23)에 종계변무를 바로 잡는데 공을 세운 사람 19명을 광국공신에 책봉하였다. 이로써 100여 년동안 지속되어 온 종계변무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1771년의 종계변무는 어떠한 내용인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1771년 10월 21일 조경묘를 건립할 터를 닦고 11월 24일 완공할 때까지 공사기간이 한 달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를 선화당 중건과정에서 이미 조경묘 건립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묘의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조경묘 건축과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신용주*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경단(肇慶壇) 조성과 그 역사성」에 대한 토론문

하태규*

이욱 선생님의 본 발표는 대한제국기 광무 3년(1899) 조성된 전주 건지산 조경단의 건립 경위와 그 역사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 전주 건지산과 시조 묘역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조선 후기 전주의 주산 논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조경단 건립 발의에서부터 조경단의 조성까지의 과정, 그리고 과거와 당대 조경단의 의미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이 발표문을 통하여 대한제국기 조경단의 건립에 대한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토론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선생님의 글을 읽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이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 건지산과 시조묘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조선 후기 전개된 건지산 주산논쟁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조선시대 건지산은 국초 이래 전주의 주산으로 인식되었고, 경기전의 내맥으로 인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조선 왕실에서는 건지산을 전주의 주산, 경기전의 내맥으로 이해하였을 뿐, 시조묘역과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히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 국가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읍지나 지리지에서 세전, 언전의 건지산에 시조묘가 있기 때문에 국초부터 건지산이 봉호되었다고 주장이 나타나고, 이러한 전승을 기반으로 건지산의 시조묘 봉축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으며, 읍지나 지리지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이러한 동향은 왕실의 시조의 묘소를 찾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조선왕실이나 이씨들이 언제부터 시조와 그 묘소에 관심을 갖고 시조묘 찾고자 하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건지산을 시조 묘소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지산과 시조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산 논쟁보다는 건지산이나 시조 묘소에 대한 역대 왕실의 태도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경위로 시조의 묘소가 건지산에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하다.

2. 이 선생님께서는 대한제국기 조경단 건립이 조선 후기 읍지의 시조 관련 기록을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작업을 거쳐 국초이래 건지산에 대한 봉호 조치를 시조 묘역과 연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조 묘역이 제단과 비석의 건립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공인된 ‘시조묘역의 역사화’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봉분의 흔적이 이미 사라져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의 풍수적 안목을 통하여 묘소를 확정하여 역사적 사실을 신화화함으로써 시조의 연원을 밝히고, 황실과 황제를 정당성을 지탱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앞서 영조 대에 학림군 이육의 상소가 있었을 때, 그것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구체적인 묘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왕실에서 역사적 실체로 받아 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득리 등의 상소를 받아 들여 ‘시조 묘소의 봉축이 아닌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받드는 조경묘를 설치함으로써 그 논의를 일탈 시켰던 바가 있었다.

그런데 대한제국기에 들어 이전 왕실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건지산 시조묘에 대한 같은 언전, 세전이 받아들여져 조경단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대한제국기 시조묘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나, 조경단 건립이 가능하게 했던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3. 이 선생님께서는 조경단 건립은 시조 묘소 대신을 제단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묘소의 봉심과정에서 시조의 묘소를 찾아 봉분을 가함으로써 무덤 앞에 제단이 있는 독특한 형식이 되었다고 하였다. 외형적으로 보면 선생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경단비를 비롯하여 건지산도형 등 각종 금석문이나 문헌자료를 보면 묘소가 ‘시조묘’가 아닌 ‘의묘소’로 기록되어 있다. 이점은 조선왕실이 시조 묘소의 인정을 매우 신중히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재곤이 봉심과정에서 묘소를 찾아 봉분을 쌓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시조의 묘소로 보이기 때문에 봉축한 것이지, 이를 진묘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만약 그것이 진묘로 인정되었다면, 구태어 조경단을 쌓을 필요가 없었고, 묘소의 명칭 또한 삼척의 준경묘나 영경묘처럼 ‘○○묘(墓)’로 정해졌어야 한다. 하지만, 조경단의 명칭은 원래대로 유지되고, 묘소는 ‘의묘소’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본 토론자의 견해로 조경단은 조선 왕실의 시조묘 앞에 만들어진 제단이 아니라, 시조인 이한 공의 묘소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단소라고 생각되는데, 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하다.

4. 마지막으로 본 학술대회는 조경단을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조경단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히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조경단의 건축 특성과 문화재구역 설정」에 대한 토론문

이상훈*

조경단은 전주이씨 시조인 이한(李瀚)의 묘소에 설치된 제단이다. 조경단이 있는 건지산에는 전주이씨 시조의 묘소가 있다고 전해져 왔는데, 조선 영조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마침내 1771년(영조 47)에 이르러서는 이득리(李得履)의 상소를 계기로 조경묘를 건립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1898년(광무 2)에 이종건(李鍾健)의 시조묘역 관리의 문제 제기와 함께 종정원(宗正院)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단의 이름을 조경단으로 수정하고, 1899년(광무 3)에는 조경단을 조성하여 이곳이 황실의 발상지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조경단의 건립은 묘를 대신하여 제단을 세운 것으로서, 현재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3호(1973. 06. 23)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 있다.

조경단은 제단의 조성과 함께 비각, 재실, 향대청, 제기고, 대문 행각 등을 건립하여 왕실의 능원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단의 설치는 사직단 제도를 따른 것이라 한다. 또한 기존 관아 건물을 헐어서 건축 부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조선 후기의 건축기술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경단은 국가 제사가 이루어졌던 공간으로서, 조선시대 예제건축의 특성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조경단 터의 역사성에 대한 고증자료의 수집과 함께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강원도 기념물 43호(1981. 08. 05 지정)였던 준경묘(濬慶墓,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묘)와 영경묘(永慶墓, 이양무의 부인 묘)가 현재는 사적 제524호(2012. 07. 12)로 승격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음은 조경단 또한 사적으로 승격 지정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조경단의 문화재구역과 보호범위 설정은 조경단의 입지와 건축적 특징,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 문화재구역은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m²)·지정면적(m²)·소유자(성명, 주소)·관리자(성명, 주소)·점유자(성명,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설정 시, 제사와 장례에 관한 유적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관한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대상은

* 전북도청 前 학예연구관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m²)·지정면적(m²)·소유자(성명, 주소)·관리자(성명·주소)·점유자(성명, 주소)·설정 근거 및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구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구역 등의 설정 시에는 해당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은 민원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또한 이러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기념물로 지정된 조경단의 경우는 기존의 현상변경허가기준안대로 마련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실의 경우는 바로 주변에 민가가 산재하여 있어서 현상변경허가기준안 마련 시에는 반드시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주민동의를 필요하다.

「조경묘, 조경단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경찬*

*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